

현안분석 2007-

입법평가 연구 07-11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I)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

박영도 · 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I)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

연구자 : 박영도(선임연구위원)

Park, Young-Do

한귀현(순천대 교수)

Han, Kwi-Hyeon

2007. 10. 31.

국문 요약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 왔으며, 규제영향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평가수법으로서 모든 제안에 그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는 ①정책입안을 위한 엄격한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인식이 불충분한 점, ②규제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도입하기 전의 최후의 장애로서 보고 있으며, 조기분석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한 점, ③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④대안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⑤비용편익에 관한 데이터 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 ⑥논거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점, ⑦규제영향평가가 다른 문서작성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⑧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관료적인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초기, 중간 및 최종의 3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나, 새로운 영향평가에서는 5단계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개발단계(Development stage)에서는 정책문제의 정의, 증거수집,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정책목적의 특정, ②대안선택단계(Options stage)는 대안의 특정, 사전협의를 통한 대안의 테스트, ③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는 대안의 세련화(refinement), 공중에의 협의 및 비평을 위한 공표, ④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는 선호대안(제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둔다(법안 및 하위법령과 함께 공표). ⑤실시단계(Implementation stage)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규제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및 공표이다. 또한 마지

막의 심사단계(Review stage)에서는 개입 또는 규제가 실시된 후에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 키워드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정책 입안, 비용편익, 새로운 대안과 평가단계

Abstract

In the United Kingd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7. It is obligatory to implement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every proposal as a way of evaluat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of it. However,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of such problems as: (1) perception of its fundamental object as a rigorous analysis for policy making is insufficient (2) RIA is, in most cases, considered to be the final barrier to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us, is not included adequately in early analyses; (3) there is the lack of explicit description of basic problems; (4)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is not sufficient (5) decisively critical data on costs-benefit analyses is not found; (6) access to data and evidence is not possible (7) there is frequent overlap between RIA and other documents; and (8) the guidelines are overly bureaucratic.

While RIA had to be made at the three stages of early, midterm, and final, it is now made at five stages including (1) the development stage of defining policy issue, collecting evidence, providing theoretical base for the government invention, characterizing policy objectives; (2) options stage of selecting options and testing them through prior consultation; (3) consultation stage of the refinement of options and announcement for public agreement and criticism (4) final proposal stage of determining the preferable proposal focusing on cost and benefit evaluation (and announce it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5) implementation stage of publicizing the final version

of laws, regulations, or other regulatory measures. And at the final review stage that was not considered in the prior RIA the intervention or regulation is investigated in order to evaluate actual cost- benefits and desirable effects of it after the implementation.

※ Key Words : British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Policy-making, Cost- benefits, New options, Evaluation stages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부 영국의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개요	11
I. 개정경위	11
II.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3
1. 요약서 작성	13
2. 장관선언의 회수증가	14
3. 영향평가 작성단계의 증가	14
4.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안	15
5. 정부개입의 논거	16
6. 비용편익의 관계	17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نس 및 Toolkit 전문	19
I. 영향평가 가이드نس	19
1. 영향평가란 무엇인가?	19
2. 어떠한 유형의 개입이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가?	20
3. 영향평가는 언제 어느 정도 빈번하게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하는가?	21
4. 정부에 의한 개입의 사례란 무엇인가?	23

5. 영향평가를 공표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어떠한 승인이 필요한가?	24
6. 영향평가문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25
7.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25
8.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무엇이 취급되어야 하는가?	26
9. 비용 및 편익	27
10. 기타 질문	29

II. 영향평가 Toolkit

1. 서 문	34
2. 정부개입의 논거 및 목적	38
3. 시장의 실패	41
4. 공정성 및 다른 목적	43
5. 기존 정책의 영향력	43
6. 비례성 분석	44
7. 공공부문 영향평가	46
8. 실시후 심사	48
9. 장관의 선언	50
10.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와 Evidence Base	53
11. 정책대안의 생성 및 최종후보게재	54
12. 대안의 사전평가	55
13. 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정보	56
(1) 비용 및 편익분석	58
(2) 정량화	61

(3) 편익분석	62
(4) 비용분석	64
(5) 비용 및 편익의 범위	65
(6)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의 할인	68
14. 전제의 테스트	70
15. 영향을 받는 부문 및 집단	71
16. 리스크, 불확실성 및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	73
17. 실 시	74
18. 모니터링	76
19. 시 행	76
20. 제 재	78
21. EU지령의 전환	79
22. 보상의 간소화(상쇄)	81
23. 경 쟁	85
24. 조직당 평균연차비용	87
25. 관리상의 부담 및 영향평가	88
26. 구체적 영향테스트	93
27. 관련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99
28. 비부처 공공기관	100
29. 새로운 부담의 원칙	100
30. 영향평가의 품질보증	101
31. 일몰조항	101
32. 규제설명책임을 위한 위원회 및 정책 승인	103
33. 협의규약	103
34. 규제대안의 유효화	104

35. EU교섭에 대한 영향평가의 사용	104
36. 영향평가 조감도	106
37. 공 표	108

< 부 록 >

1. 상세연락처	111
2. 영향평가사례	112

제 1 부 영국의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개요

I. 개정경위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 왔으며, 규제영향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평가수법으로서 모든 제안에 그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는 ①정책입안을 위한 엄격한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인식이 불충분한 점, ②규제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도입하기 전의 최후의 장해로서 보고 있으며, 조기분석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한 점, ③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④대안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⑤비용편익에 관한 데이터 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 ⑥논거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점, ⑦규제영향평가가 다른 문서작성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⑧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관료적인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정부에서는 정책입안의 중심에 영향평가를 편입하고, 정책입안을 실증하는 경제적 및 기타 분석의 질을 개선하며 분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2006년 7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협의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후 협의결과 도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2007년 4월 2일에 새로운 영향평가제도(Impact Assessment)를 공표하고¹⁾ 동년 5월 11일에는 영향평가 Toolkit을 발표하였다.²⁾

새로이 개편된 영향평가제도의 공표에 즈음하여 내각사무처 장관 Pat McFadden은 “규제는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리스크로부터 사람들

1) http://bre.berr.gov.uk/regulation/ria/ia_guidance/

2) <http://bre.berr.gov.uk/regulation/ria/toolkit/>

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실시비용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보다 명쾌한 가이드라인 및 영향평가를 규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실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것은 부담이 최소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³⁾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편입되는, 보다 간소하고 투명성이 높은 절차로 이전의 규제영향평가를 개선한 것이다. 내각사무처에서는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현대적인 규제가 과제에 조화되도록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어떤 경우에는 이 점을 대단히 성공리에 달성하였으나, 그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의 약점이 그 적용에 있어서 모순을 가져왔다고 하고,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영향평가는 2007년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영향평가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①정부에 의한 개입의 논거(rationale) 및 최종제안을 지지하는 증거(evidence)의 쌍방의 개요를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요구를 포함하는 명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한 개정서식, ②폭넓은 일반국민에 의한 검토(scrutiny)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영향평가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 ③부처내의 결정(arrangements)의 개선에 의하여 지지되는 영향평가에 있어서 분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화된 장관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④개발 중인 규칙의 부담에 초점을 둔, 정책결정자가 질 높은 영향평가를 보다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한 개정된 가이드스, ⑤실시 후의 심사(post-implementation review)에 대한 중요성 증대 등이다.

3) http://bre.berr.gov.uk/regulation/news/2007/070402_ia.asp 참조.

II.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의 개요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제출서류의 서식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을 하였다. 즉, 정책논거, 정부개입이유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장관선언의 개선, 비용편익의 강화 및 사후심사의 기일을 특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표준비용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Toolkit를 마련하여 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내각사무처에서는 이행을 위한 훈련과 장기지원을 행함과 아울러 영향평가의 품질보증을 위한 경제적 전문지식에 관한 가이드언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1. 요약서 작성

정책논거, 정부개입의 이유, 비용편익에 관하여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15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여, 새로운 영향평가에서는 요약서(Summary)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이 높은 농축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영향평가 문서에는 세 가지의 의무적인 구성요소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속문서(annex)를 수반한다. 즉, ①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Intervention & Options page)에는 특정된 문제 및 고려된 정책의 대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언급한다. ②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Analyse & Evidence page)에는 고려된 정책대안의 각각에 관하여 편익, 비용 및 효과를 포함한 중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언급한다. ③증거의 기초(Evidence Base)에는 요약페이지를 지지하는 데이터 및 계산을 제시한다. ④부속문서(Annexes)에는 착수되고 있는 구체적 영향테스트(Specific Impact Tests)의 상세를 제시한다.

2. 장관선언의 회수증가

규제영향평가의 절차에서는 담당 장관에 의한 규제영향평가(RIA)안에 관한 승인선언(서명)을 의회에의 법안제출전 등의 최종단계만 하도록 하였으나, 영향평가의 절차에서는 그에 부가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협의에 회부하는 영향평가안에 관하여도 담당 장관의 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취지는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관이 영향평가안의 전부를 읽고 정책안의 영향, 비용편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정책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한 평가(peer review)절차로서, 부처경제전문가를 관여시키고 장관에 조언을 행하도록 건전한 절차를 작동시킴으로써 장관선언을 촉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각 부처에서는 내부적인 승인구조, 정책개발절차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심사, 적절한 경우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에 의한 외부위원회를 활용한 증거심사 또는 통상적으로는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사항에 대응하는 장관에의 모든 제출물에 관하여 책임 경제전문가(Chief Economist)로부터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Toolkit에서는 이들 절차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3. 영향평가 작성단계의 증가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초기, 중간 및 최종의 3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나, 영향평가에서는 5단계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개발단계(Development stage)에서는 정책문제의 정의, 증거수집,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정책목적의 특정, ②대안선택단계(Options stage)는 대안의 특정, 사전협의를 통한 대안의 테스트, ③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는 대안의 세련화(refinement), 공중에의 협의

및 비평을 위한 공표, ④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는 선호대안(제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둔다(법안 및 하위법령과 함께 공표). ⑤실시단계(Implementation stage)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규제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및 공표이다. 또한 마지막의 심사단계(Review stage)에서는 개입 또는 규제가 실시된 후에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4.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안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관하여 요구되며 이른바 규제이외의 실시지침(Code of Practice, 통상적으로는 독립단체 등이 정부 또는 각 부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분야에서 운영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작성)과 정부의 가이드스도 포함된다. 즉, ①기업(business) 또는 제3섹터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삭감하는 제안, ②공공부문에서 비용에 영향을 부여하는 제안으로서, 그 비용이 사전 합의된 가치(일반적으로 500만 파운드)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안이 비용 및 편익에 있어서 전체적인 순변화(net change)를 초래하지 않으나, 어떠한 형태의 재분배(redistribution)(집단 간의 비용 또는 편익의 교환 또는 이전이 있는 경우와 같이)가 발생하거나 관리상(administrative)의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④출처가 규제적(regulatory)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또는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제3섹터조직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안, ⑤EU의 제안에 관한 영국의 교섭의 입장에 관한 각의합의(collective agreement)를 요구하는 때 및 입법계획 내각위원회(Legislative Programm Cabinet Committee)에 의원입법을 위하여 상정하는 때 등이다.

종전의 규제영향평가(RIA)에서는 규제이외의 것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규제영향평가의 “규제”라는 문자를 없애고 단순히 “영향평가”로 한 것

이다. 이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라는 용어가 이미 브랜드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영향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즉, ①정책의 변경이 사업, 공공부문, 제3섹터조직, 규제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또는 절감(savings)에 연관되지 않은 경우, ②도로봉쇄명령(road closure orders), ③성문법에 의한 요금 또는 세금의 변경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사전에 정해진 계산식(formula)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관련하는 관리상의 비용 또는 절감이 수반되지 않는 세금 또는 세율 기타 변경의 경우 등이다.

5. 정부개입의 논거

어떠한 정책에 의한 정부개입도 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논거로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또는 공정성 및 다른 목적(Equity and other objectives) 등을 열거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자체가 유효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고 가져올 것이 예견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잠재적인 시장의 실패유형으로는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의 주된 원인]

실 패	정 의	사 례	가능한 개입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적 및 비배타적인 재화 (a)	방위, 경찰, 의료, 공중위생	공적 제공 ; 경쟁입찰
외부성 (Externalities)	개인 또는 회사의 활동이 다른 자에게 영향을 부여하나 그 비용 또는 편익은 거래의 가치중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염, 도로정체, 지적재산	세금, 조성금, 법률, 재산권설정-사례, 매매허가 (tradable)
불완전한 정보 및 비대칭적인 정보 (imperfect informat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당사자(예컨대, 매수자 및 매도자)가 일련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자주 리스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거래	지과의료, 사법 서비스, 중고차, 보험, 건강에 유해할 지도 모르는 개인적인 관습	질의 규제, 정보 제공, 인정 (accreditation)
수익증대 (Increasing returns)	생산고가 증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한다.	자연독점	기구의 분할, 공적소유, 사적 독점의 규제
시장력 (Market power)	1인 또는 수인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가격에 영향을 부여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독점, 단일 매수자, 기업결합 (cartels)	시장의 장벽을 제거, 합병규제, 경쟁입찰

주 : (a) 비경쟁적(Non-rival)이란 1인의 인간에 의한 재화의 소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한 그 재화의 사용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비배타적(Non-excludable)이란 공공재가 1인의 소비자에게 입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유효하게 입수가 가능하고, 무임승차(free-riding, 즉, 어떤 소비자가 다른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지불을 태만하는 경우)로 일컬어지는 문제를 낳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입에 대한 공정성 논의(equity argument)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입에 대한 공정성 논의]

공정성 논의	설 명
수직적 공정(Vertical Equity)	유복한 개인가정에서 보다 빈곤한 개인/가정에의 소득재분배
수평적 공정(Horizontal Equity)	유사한 필요성을 지닌 개인/가정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체성(Social Inclusion)	누구든지 자신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소득의 기회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 공정(Intergenerational Equity)	현재 및 장래세대의 필요성에 균형을 가질 것

6. 비용편익의 관계

영향평가에서는 제안되는 정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에는 감시, 시행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비용이 포함되며, 편익에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편익이 포함된다. 편익에 관하여는 화폐화 등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나(내각사무처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편익은 정량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모든 편익을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그 기재에 있어서 정책에 따른 편익이 정량화되어 있지 아니라도 결국은 수치로서 비용을 상화하지 않더라도 비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담당 장관은 그 제안을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한다”고 승인하고 서명 선언한다. 편익의 정량화수법은 각 부처에 맡겨지고 있다.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نس 및 Toolkit 전문

I. 영향평가 가이드نس (Impact Assessment Guidance)

1. 영향평가란 무엇인가?

(1) 영향평가란 다음의 양측을 말한다.

- 공공, 민간 및 제3섹터 가운데 정부에 의한 가능한 그리고 실제의 개입결과를 정책결정자가 숙고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적인 절차(process)
- 정책이 시행된 후에 그 영향을 심사하는(reviewing)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개입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관련되는 증거의 고찰(weigh)과 제시를 정부가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tool)

(2)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출처(source)가 국내 또는 국제적인가에 관계없이 민간부문, 제3섹터 및 공공부문에 영향을 부여하는 정부에 의한 개입 전반에 적용된다. 영향평가의 작성 및 공표(publication)는 관심 있는 자가 다음의 사안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한다.

- 왜 정부가 개입을 제안하고 있는지 ;
- 새로운 정책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부여하고 있는지 ; 그리고
- 제안된 그리고 실제의 조치(measure)의 비용 및 편익의 견적

(3) 정부는 필요시에만 개입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목적이 폭넓은 대안(option)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비용 및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제안을

특정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2. 어떠한 유형의 개입이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가?

(1) 기업(business) 또는 제3섹터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삭감하는 어떠한 제안도 영향평가를 필요로 한다. 공공부문에서 마찬가지로 비용에 영향을 부여하는 어떠한 제안도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나, 그 비용이 사전 합의된 가치(일반적으로 500만 파운드)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부처 또는 규제당국(regulator)이 그 영향으로서 비용을 증가 또는 삭감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형태의 개입[실시규범(Codes of Practice) 또는 가이드نس와 마찬가지로 의원입법(primary legislation) 및 정부제안입법(secondary legislation)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영향평가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자주규제 또는 선택규제(opt-in regulation)를 장려하는 제안도 포함된다. 비중앙행정기관(non-whitehall department)에 관한 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نس는 영향평가 Toolkit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

(2) 출처가 규제적(regulatory)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또는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 제3섹터조직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안에 관하여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예컨대, 보고요건에 있어서 변경, 자금방출(release)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및 새로운 목표의 강요(imposition)는 전부 평가되어야 할 비용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접근방식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제안의 비용이 500만 파운드 이하이며 정치적 또는 언론의 높은 수준의 관심을 야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단계/대안선택단계의 영향평가만 필요하다. 상세한 것은 Toolkit를 보라.

- (3) 영향평가는 제안이 비용 및 편익에 있어서 전체적인 순변화(net change)를 초래하지 않으나, 어떠한 형태의 재분배(redistribution)(집단간의 비용 또는 편익의 교환 또는 이전이 있는 경우와 같이)가 발생하거나 관리상(administrative)의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요구된다.
- (4) 영향평가는 EU의 제안에 관한 영국의 교섭의 입장에 관한 각의 합의(collective agreement)를 요구하는 때 및 입법계획 내각위원회(Legislative Programm Cabinet Committee)에 의원입법을 위하여 상정하는 때에도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5) 다음의 경우에는 영향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책의 변경이 사업, 공공부문, 제3섹터조직, 규제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또는 절감(savings)에 연관되지 않은 경우와 도로봉쇄명령(road closure orders), 성문법에 의한 요금 또는 세금의 변경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사전에 정해진 계산식(formula)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관련하는 관리상의 비용 또는 절감이 수반되지 않는 세금 또는 세율 기타 변경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영향평가는 언제 어느 정도 빈번하게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하는가?

- (1) 영향평가는 가능한 그리고 실제의 정부개입에 의한 결과(consequences)에 관하여 정책결정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적인 절차이며, 그것은 정책과제를 특정 하는 초기단계부터 정책의 대안개발, 공중에 대한 협의(public consultations)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단계를 통하여, 그리고 실시의 심사까지에 이른다. 심사가 새로운 정책과제(필시 개입 그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부터 발생한)의 특징으로 연관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절차를 개시한다.

(2) 정책결정자는 또한 영향평가서식(Impact Assessment Template)과 가이드스를 이 절차를 통한 안내가 되는 도구로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개발의 최초단계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과제를 이해, 정의하고 정부에 의한 개입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지원도구로서 영향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3) 이 절차 가운데 영향평가가 공표되거나 재공표되어야 하는 몇 가지 시점이 있다. 영향평가 Toolkit에 제시되어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 정책의 제안이 공중에 대한 협의에 제출된 때
- 정부제출법안 및 정부지원을 받은 의원제출법안(Private Members Bill)이 상원, 하원의 어느 곳에 제출된 때
- 위임입법(Statutory Instrument)의 초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 법률(Act), 위임입법 또는 기타 규제조치(regulatory measures)의 실시직전
- 규제조치가 실시된 후의 심사

(4) 이들 시점동안 정책결정자들은 영향평가를 임의로 갱신 및 개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지식 및 증거가 증대하기 때문에 거듭 문서화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5) 이 절차 가운데 중요한 점은 표1에서 정리하고 있다.

- 개발단계(Development stage) : 정책문제의 정의, 증거수집,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 정책목적의 특정
- 대안선택단계(Options stage) : 대안의 특정, 사전협의를 통한 대안의 테스트
- 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 : 대안의 세련화(refinement), 공중에 의 협의 및 비평을 위한 공표

- 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 : 선호대안(제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둔다. 법안 및 하위법령과 함께 공표
- 실시단계(Implementation stage) : 법령, 규칙 또는 기타 규제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공표
- 심사단계(Review stage) : 개입 또는 규제가 실시된 후에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공표

(6) 기업에 관계가 있는 모든 새로운 제안에 관하여 규제가 실시되는 12주전에 가이드نس가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에 관계가 있는 새로운 제안은 4월 6일 또는 10월 1일의 어느 공통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s)에 시작하도록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نس는 Toolkit를 참조하라.

4. 정부에 의한 개입의 사례(the case for Government intervention)란 무엇인가?

- (1) 정책과제에의 대응을 개발하는 초기단계에서 정책결정자는 정부에 의한 개입사례를 고려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개입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논거란 예컨대, 시장의 실패사례 - 그것은 시장이 시민,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Outcome을 가지지 않거나 그 자신이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이다 - 또는 대처될 필요가 있는 명확한 정부의 배분, 공정성 또는 기타 사회적인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계할지도 모른다. 상세한 정보는 Toolkit를 참조하라.
- (3) 정부에 의한 개입이 정책문제에 대응하거나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통적인 규제(classic regulation)에 대한 양자택일(예컨대, 자주규제, 자발적인 행동규범)이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정부에 의한 개입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경제적인 왜곡을 창출하여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입사례가 고려되고 있는 때에는 이들 일어날 수 있는 영향도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속부처의 경제전문가는 이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영향평가를 공표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어떠한 승인이 필요한가?

(1)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장관은 공적인 영향평가를 승인할 것이 요구된다. 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의거하여 그 영향평가가 유력한 대안의 적절한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한다.

(2) 영향평가의 최종제안/실시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영향평가를 읽고 다음의 사안에 관하여 만족하였음을 제시하는 선언문서에 서명한다.

- 정책에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3) 각 부처는 정책개발의 초기단계부터 부처경제전문가를 관여시키고 장관에 조언을 행하도록 건전한 절차를 작동시킴으로써 이들 선언을 촉진하여야 한다. 예컨대, 확고한 부처의 절차는 내부적인 승인 구조, 정책개발절차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심사, 적절한 경우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에 의한 외부 위원회를 활용한 증거심사 또는 통상적으로는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사항에 대응하는 장관에의 모든 제출물에 관하여 책임 경제전문가로부터의 조언요구를 포함할지도 모른다. Toolkit는 이들 구조에 관하여 가이드스를 제공한다.

(4)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부처의 Website상의 영향평가에의 링크와 아울러 공표된 모든 영향평가의 개요가 입수가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분야의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다.

6. 영향평가문서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영향평가문서에는 세 가지의 의무적인 구성요소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속문서(annex)를 수반한다.

-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Intervention & Options page)에는 특정된 문제 및 고려된 정책의 대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을 것
-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Analyse & Evidence page)에는 고려된 정책대안의 각각에 관하여 편익, 비용 및 효과를 포함한 중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언급하고 있을 것
- 증거의 기초(Evidence Base)에는 요약페이지를 지지하는 데이터 및 계산이 제시되고 있을 것. 증거의 기초는 고려된 모든 정책대안을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 부속문서(Annexes)에는 착수되고 있는 구체적 영향테스트(Specific Impact Tests)의 상세를 제시하고 있을 것

7.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1) 영향평가의 각 단계에 대하여 1매의 표지면(cover page)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 포함되는 정보는 단계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개발 또는 대안의 단계에는 선호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Toolkit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참조).

- 부처의 이름 및 영향평가가 관련하는 정책대안 또는 제안의 제명(예컨대, 낙농업자를 위한 자주규제계획)
- 정책개발단계 - 예컨대, 개발, 대안, 협의, 최종제안, 실시 또는 실시후 심사
- 영향평가의 일련번호 및 그 작성연월일
- 영향평가는 독립된 문서로서 읽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일반인의 정책에의 이해를 보다 양호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관련 중요한 간행물(publications)
- 문서에의 접근이 가능한 Website에의 링크와 문의를 위한 담당자성명 및 전화번호
- 다음 사안을 설명하는 짧은(80단어 전후) 요약
 - 고려되고 있는 문제 및 정부의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
 - 정책의 목적 및 그 의도하는 효과
 - 어떠한 정책대안이 고려되었는지 및 선호대안의 정당화
- 정책의 실제의 비용 및 편익을 입증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달성하고 있는 중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심사가 착수되는 연월일, 대개의 경우 정책변경의 3년 후에 심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나 그것은 정책에 의존한다.
- 영향평가가 도달한 단계에 따라서는 위 제18항 및 제19항에서 언급한 책임 장관으로부터의 선언문

8.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무엇이 취급되어야 하는가?

- (1) 증거의 수집은 정책입안절차의 개시 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를 특정하여 개발부터 최종제안까지 진행된 각각의 정책대안에 관하여 완성할 필요가 있다. 최종제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정책대안은 상당히 좁혀질 수도 있다. 실시단계에서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한 페이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단계는

실시 후 심사에 착수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을 제공한다.

- (2) 협의 및 그 이후의 단계에 넘어간 각대안에 관하여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는 제명으로서 기능하게 하기위하여 각각의 정책대안의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9. 비용 및 편익

- (1) 비용 및 편익의 정보는,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별도의 항에 제시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의 제시에는 공통의 절차가 적용된다.

- (2) 요약에 포함되는 연차 및 총액의 비용과 편익의 계산에는 다음의 공통원칙이 적용된다.

- 「현상유지(status quo)」 또는 「최저한의 것을 행하는(do minimum)」 대안에 덧붙여 모든 발생한(accrued) 비용 및 편익은 분석의 초점이다.
- 요약은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모든 범위에 걸쳐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화폐화(monetised)하여야 할 것이다.
- 적절한 경우에는 범위(ranges)를 설정하여 비용과 편익의 액(figures)의 제시에 있어서 잘못된 정확성(spurious accuracy)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 (3) 다른 정부부처에 관련되고 있는(falling on) 비용(사법제도 및 법적 지원의 비용과 같은)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4) 제안 또는 다른 영향(특정의 환경적인 영향과 같이)에 의하여 영향 받는 주된 집단에게 발생한 화폐화된 중요한 비용과 편익의 설명 및 규모는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보통 정책의 첫 번째의 효과(first-round effect)만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서는 다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

다. -재무부의 Green Book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 참조.

(5) 연차비용(Annual cost) 및 편익액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불변가격(constant prices), 즉 현재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경우에는 비용 및 편익의 연간계산방식이 보다 적절할지도 모르고 또한 이들 금액의 제시에 관하여 부처의 선진규제팀(Better Regulation Unit)과 협의할 것이 인정된다.

- 「1회성(one-off)」비용과 편익은 조직 또는 개인이 새로운 규제 또는 개입에 순응하기 위한 변천을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회성 비용 또는 편익의 합계는 이들 비용 또는 편익이 발생하는 연도수로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1회성」 연차비용 및 편익의 평균과 변천이 발생하는 연도수의 쌍방을 요약페이지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 평균연차비용 및 편익(「1회성」을 제외)은 분석에 있어서 기간 중에 계상된 계속적인(ongoing) 비용 및 편익의 평균을 나타낸다.

(6) 제안에 관련되는 현재가격(present Value, PV)의 용어에서 제시되는 총비용 및 편익은 권장되는 할인율에 관한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Green Book :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참조).

(7) 화폐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향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기타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은 비용과 편익이 요약페이지에 정량화 또는 정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적당한 경우에는 여기에는 주된 환경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8) 분석에 의하여 획득된 결과에 영향을 부여하는 비용 및 편익계산을 실증하는 어떠한 중요한 가정(assumptions), 감도(sensitivity) 또는 리스크(risk)도 요약페이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9) 비용편익분석은 대안의 편익이 그에 관련되는 비용에 적합하거나 비용을 초과하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대체의 대안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 가격베이스연도(즉, 분석 중에 사용된 가격이 제시된 해) 및 분석이 행해진 기간을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의 범위가 서술되어야 한다. 이것은 총편익이 총비용을 초과하거나 적은가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만들어진 범위는 분석 중의 수자의 주변의 확실성차원을 제시한다.
 - 순현재가치의 최량추정치(best estimate)도 또한 서술되어야 한다.

10. 기타 질문

- (1)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서는 다른 다수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
- (2) 정책대안의 지리적 범위(즉, 정책이 영국에, 영국 및 웨일즈에 또는 전영국에 적용되는지)
- (3) 정책이 실시되는 연월일,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통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s)의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법률은 오직 각년의 4월 6일 또는 10월 1일부터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된 모든 대안(비규제적인 대안을 포함)에 관하여 제안의 실시연월일을 요약페이지에 명확히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 (4) 시행(Enforcement).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어느 조직이 정책을 시행하는가
 - 그들 조직에게 이 제안의 시행의 연차총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 계산에는 불변가격을 사용할 것

- 시행은 Hampton 원칙에 따르고 있는가. Hampton 원칙에 관하여는 Toolkit를 참조.
- (5) 실시는 EU에 의한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가. 제안이 그 실시하는 EU지령(EU Directives)의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제안의 사례를 Evidence Base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잉실시(over-implementation)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는 Toolkit를 참조. 제안이 EU 지령과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음」(“N/A”)라고 기재한다.
- (6) 1년 당 제안된 상쇄방안(offsetting measure)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제안하고 있는 상쇄방안의 가치를 정량화할 것.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싶은 때에는 기존의 요건을 단순화 또는 제거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사안에는 영향평가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정보를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가 Evidence Base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7) 온실효과 가스배출의 변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의 에너지백서(2003년 2월)는 탄소가스영향평가(carbon Impact Assessment)를 환경적 영향의 평가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하는 요건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온실효과 가스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모르는 활동 또는 섹터에 그 정책이 환경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완전한 탄소가스영향평가를 행할 필요는 없다. 상세한 정보는 Toolkit를 참조.
- (8) 제안은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하는가. 정책대안이 새로운 또는 기존의 기업의 시장진입을 보다 곤란하게 하는지, 그것이 시장의 가운데에서 경쟁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인지를 특정할 것. 경쟁에 관한 다른 정책대안의 효과를 고려하는 때의 지원으로서 공정거래청의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의 가이드스를 참고할 것. Toolkit를 참조. 정책이 조성금(subsidy)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조성금의 경쟁에

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청의 가이드נס를 참조할 것(영향 받는 시장의 특정에 관한 갱신 정보에 관하여는 Toolkit를 참조).

(9) 기업(Business) 및 제3섹터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규모가 다른 조직에 관하여는 극소(micro), 소규모(small), 중규모(medium) 및 대규모(large) 조직의 각각에 관하여 고려되고 있는 대안 또는 제안의 조직당 예상연차비용(1회성을 제외)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극소 및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불균형적인 규제 부담을 삭감하기 위하여 이들 카테고리의 면제에 관하여 주의 깊은 고찰도 하여야 한다. 조직의 규모의 정의와 조직의 비용계산을 고려하는 때의 지원으로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소규모회사영향 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의 가이드נס를 참고하고, 소규모회사에의 영향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Toolkit를 참고.

(10)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Impact on Admin Burdens Baseline) 2005년에 정부각부처 및 기타 단체는 법률의 결과로서 기업 및 제3섹터에 부과되는 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의 규모를 추정하는 측정연습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 각조직은 관리상의 부담의 삭감에 관한 목표(target)에 동의하였다.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

- 새로운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관리상의 부담증가
- 규제의 간소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상의 부담감소
- 이들 변화의 순영향(net)

비용은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과 호환성을 가지도록 2005년의 가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상의 부담이 영향평가서식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관련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Toolkit를 참조.

(11) Evidence Base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12) Evidence Base는 요약페이지에 제시된 회답을 지지하는 기술(narrative), 분석 및 조사의 혼합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주된 항목의 예산 및 편익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관하여 숫자의 명확하고 투명한 분해로 Evidence base에서 제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분해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밸런스가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이 정보는 외부의 음미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일반 독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관심을 가진 외부당사자가 데이터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재무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에 관한 Greenbook의 가이드نس와 일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13) 어떻게 Evidence Base를 제시하는가에 관하여 부처 및 규제당국은 매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및 외부당사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30페이지 이내의 분량이 권장된다. 다수의 대안(각각에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를 가진)이 고려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모든 대안에 명확히 대응하는 단일의 Evidence base가 있어야 할 것이다.

(14) Evidence Base는 고려중의 정책대안 또는 제안에 관련하는 어떠한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에도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5) 구체적 영향테스트(Specific Impact Test) : 무엇이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

(16) 정부는 정책개발을 종합하고(joined up) 개별정책의 제안이 정부의 우선되는 목적을 고려할 것을 확실하게하기 위하여 일련의 테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몇 가지의 테스트는 정책결정자가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편익을 화폐화하는 것을 지원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타 테스트는 정책결정자가 화폐화되지 않는 비용 및 편익 또는 예컨대, 정책의 제안에 의한 다른 영향(인종, 성별 또는 장애의 점에서)을 특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7) 구체적 영향테스트 Toolkit 가운데 체크리스트는 정부 각부처에 의하여 개발되고 부처의 가이드نس에 의하여 실증된 일련의 테스트 및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테스트는 수행되는 평가가 필요 또는 바람직한지를 정책결정자가 간단하게 측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최초의 검토(initial screening)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서 입수 가능한 부처가이드نس를 참고로 할 것을 권장한다.

(18) 구체적 영향평가의 사용이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비용 및 편익의 화폐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는 주요한 Evidence Base에 제시되고 또한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화되지 않는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정보를 테스트가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책대안의 전체적인 이해에 관련하는 때에는 그 성과를 영향평가에 추가하여도 좋다.

(19) 인종, 장애 및 성별영향평가는 전부 관련정책에 대한 성문법에 의한 요건이다. 이들 평가는 평등의 요소(equality standards)의 각각에 관한, 정책의 잠재적인 영향의 엄격으로 확고한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공포됨과 동시에 평가가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된 법률의 경우에는 이것은 백서의 단계에서의 공포를 의미한다. 부처는 영향평가의 성과를 추가하여야 한다.

(18) 가이드نس 및 조력은 어떠한 것이 입수가능한가?

(19) 가이드نس 및 Toolkit, Toolkit에 언급되는 정보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면 부처의 선진규제팀(Better Regulation Unit)과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연락방법의 상세는 Toolkit 에서 입수가능하다.

II. 영향평가 Toolkit (Impact Assessment Toolkit)

1. 서 문 (Introduction)

영향평가 Toolkit는 정책결정자가 영향평가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Toolkit는 영향평가 가이드스 및 서식(Template)과 아울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 Toolkit의 본 향은 ;

- 정부개입의 논거 및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이것은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개입 및 대안”의 페이지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개입을 위한 제안의 비용 및 편익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은지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 이것은 건전한 Evidence Base를 구축하고,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의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요약 : 개입 및 대안 >>

부처명 :		제목 : ○○의 영향평가	
단계 :	관 :	일자 :	
관련공표물 :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 : <http://www>.

문의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II. 영향평가 Toolkit (Impact Assessment Toolkit)

고려중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

정책의 목적 및 의도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어떠한 정책대안이 고려되고 있는가? 선호되는 대안이 있다면 정당화하십시오.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바람직한 효과의 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언제 정책이 심사되는가?

장관의 승인 단계별 영향평가 :

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입수가 가능한 증거하에 그것이 유력한 대안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만족한다.

책임장관 서명

연월일

<< 요약 : 분석 및 증거 >>

대안 :	설명 :
------	------

비용	연차비용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의 설명 및 규모
	1회성(이행) £ Yrs	
	평균연차비용(1회성을 제외) £	총비용(PV) £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스 및 Toolkit 전문

편익	연차편익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 폐화된 편익의 설명 및 규모
	1회성(이행) £	Yrs	
	평균연차편익(1회성을 제외) £		총편익(PV) £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기타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는 편익		

중요한 가정/민감도/리스크

가격베이스연도	기간연수	순편익폭(NPV) £	순편익(NPV 최량추정치) £
---------	------	----------------	---------------------

정책/대안의 지리적 범위는?				
정책이 실시되는 연월일은?				
어느 조직이 정책을 시행하는가?				
이들 조직을 위한 시행의 연차총비용은?	£			
시행은 Hampton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아니오			
실시는 EU의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가?	예/아니오			
제안되는 1년당 상쇄방안의 가치는?	£			
온실효과가스배출의 변화의 가치는?	£			
제안은 경쟁에 현저한 영향을 부여하는가?	예/아니오			
조직당 연간비용(£-£) :일회성을 제외	극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들 조직 중 면제되는 것이 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2005년도 가격) (증가 - 감소)			
증가 £	감소 £	순영향 £	

중요 : 연차비용 및 편익; 불변가격 (순) 현재가치

요약서를 위한 Evidence Base

[정책대안 또는 제안을 가져온 증거, 분석 및 상세한 기술을 제시하
기 위하여 이 공간(최고 30페이지가 권장)을 사용하십시오. 정보가 본
양식의 요약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리되고 있
는 것을 확실히 하시오]

구체적 영향테스크 체크리스트

다음의 표를 사용하여 정책대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가를 명시하기 바람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부여하는 어떠한 테스트의 성과도 주요한 Evidence Base의 가운데 포함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시오. 기타 성과는 부속문서로서 하더라도 무방함.

착수된 테스트 유형	Evidence base 중의 성과 예/아니오)	첨부된 성과 (예/아니오)
경쟁평가		
소규모기업영향테스트		
법적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탄소가스평가		
기타 환경		
건강영향평가		
인종평등		
장애자의 평등		
남녀평등		
인권		
농촌지역에의 영향 (Rural Proofing)		

부 록

*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 서식
(Summary : Intervention & Options page Template)

개입 및 대안페이지는 특정된 문제, 정부개입을 위한 논거(rationale) 및 고려된 정책대안(policy options)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영향평가의 각 단계에 단일의 요약 : 개입 및 대안의 페이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함되는 정보의 양은 영향평가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개발 또는 대안의 단계에서는 선호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의 완전한 사례가 말미에 제공되고 있다.

2. 정부개입의 논거 및 목적 (rationale and objectiv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어떠한 정부개입도 명확한 논거(rationale)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는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가상사례를 참조(완전한 사례가 제공되고 있다).

관련부처		연소삭감의 영향평가	
단계 대안	제2관 2007년 5월 14일	관련공표 소형기계산업전략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트 : www.abed.DIT.gov.uk

문의 담당자 성명 : Alan Smithee

전화번호 : 208 08080808

고려중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

소형기계산업은 연소중독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연소(Phlogistin)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연소중독은 community에 연간 400-900만 파운드의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널리 community에 부과되는 비용을 소형기계산업이 부담하지 않기위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정책의 목적 및 의도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경쟁력있는 소형기계산업을 유지하면서 연소의 배출을 식감시키기 위하여.
의도되는 효과 : 2010년말까지 연소의 배출의 안전한 차원까지 삭감.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공평성 및 윤리성의 고려는 정부개입을 위한 중요한 동기이다. 이들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의 요소의 조합이 하나의 개입의 필요성을 실증할 수도 있다.

정책개발절차의 매우 초기단계에서 논거를 분명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실패 또는 다른 목적의 분석은 정책개발을 위한 evidence base를 실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안된 개입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편익의 증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안을 특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 그 규모 및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
- 문제의 증거 및 본질
- 그것이 발생할 확률 및 일어나는 빈도

이 절차의 일부로서 그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존의 정책의 영향력(existing policy levers)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영향력에는 정부이외의 규제적 및 비규제적인 해결법이 포함될 수 있다.

“양호한 규제의 원리(principles of good regulation)”를 고려하고, 정보 및 자주규제의 조건과 같은 “규제의 대체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규제 테스크포스(Better Regulation Taskforce) 보고서, “선진규제의 방법(Routes to Better Regulation)” 및 “선진규제를 위한 상상력 풍부한 사고(Imaginative Thinking for Better Regulation)”도 참조.

정책입안의 절차를 통하여 가능하고 실제의 개입결과를 고려하고 이해하는 절차로서 영향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책결정자에게 이바지한다.

- 다수의 부처는 폭넓은 정책사이클인, 논거(Rationale), 목적(Objective), 사전평가(Appraisal), 감시(Monitoring), 평가(Evaluation) 및 피드백(Feedback) [이하 ROAMEF라 한다]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 재무부의 Green Book :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 영향평가 가이드نس는 영향평가가 착수되어야 할 때 - 예컨대, 개발, 대안, 협의, 최종제안, 실시 및 심사단계에서 - 정책입안절차의 중요한 점을 예증하고 있다.
 - 사전평가 및 평가 사이클의 각각의 측면에 얼마만큼 초점을 두는가는 영향평가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다양하나 각각의 단계에서 영향평가는 ROAMEF모델과 같은 모델에 따라 실증되어야 할 것이다.
 -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정책결정자가 개입을 위한 논거 및 정책 목적에 관하여 고려함으로써 영향평가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과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다양한 대안이 사전평가된다. 개입의 대안이 후에 어떻게 감시 및 평가되는가에 관하여도 이 초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영향평가는 일어날 수 있는 비용 또는 편익에 관한 정보가 보다 명확히 되어감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는 생생한 문서(living document)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책입안을

실증하는 분석을 개선하고 그로부터 높은 투명성을 확실히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 조기단계에서의 구체적 영향테스트(specific impact test)의 고려도 또한 정책개발이 상호 연계되고, 개별 정책제안이 정부의 우선적 목적을 고려하며, 의도되지 아니한 결과가 최저한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향평가의 단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Flowchart에서 볼 수 있다.

3.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이것은 시장자체가 유효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고 가져올 것이 예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사숙고된 개입은 이를 개선하는 것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유형의 잠재적인 시장의 실패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재
- 외부성
- 시장력
- 불완전한 정보
- 비대칭적인 정보
- 수익의 증대(예컨대, 자연독점)

개별 시장의 실패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관계요소가 전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실증할 수도 있다.

시장의 실패는 자주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나, 개입은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몇가지의 개입도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예컨대, 규제의 실패).

시장의 실패 - 그에 대한 대응이 정부의 실패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가도 포함된다 - 의 사례를 정의,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유

용한 정보원이 있다.

유용한 정보원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재무부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시장실패분석 및 고차원 비용편익분석 -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를 위한 안내서
- 무역산업부(DTI)의 공공정책 : Using Market-based approaches
- 내무부(Home Office)의 정책대안의 이해
- 표준 경제교재 및 정책대안에 관한 가이드스(standard economic text books and guidance on policy options)

[시장의 실패의 주된 원인]

실 패	정 의	사 례	가능한 개입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적 및 비배타적인 재화 (a)	방위, 경찰, 의료, 공중위생	공적 제공 ; 경쟁 입찰
외부성 (Externalities)	개인 또는 회사의 활동이 다른 자에게 영향을 부여하나 그 비용 또는 편익은 거래의 가치중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염, 도로정체, 지적재산	세금, 조성금, 법률, 재산권설정 - 사례, 매매허가 (tradable)
불완전한 정보 및 비대칭적인 정보 (imperfect informat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당사자(예컨대, 매수자 및 매도자)가 일련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자주 리스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거래	치과의료, 사법서비스, 중고차, 보험, 건강에 유해할 지도 모르는 개인적인 관습	질의 규제, 정보 제공, 인정 (accreditation)
수익증대 (Increasing returns)	생산고가 증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한다.	자연독점	기구의 분할, 공적소유, 사적독점의 규제
시장력 (Market power)	1인 또는 수인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가격에 영향을 부여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독점, 단일 매수자, 기업결합(cartels)	시장의 장벽을 제거, 합병규제, 경쟁입찰

출처 : Sara Connolly & Alistair Munro(1999) :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 Public Policy : Using Market-based approaches, DTI 2005.9. : HTM Managing risks to the public : 사전평가가이드스, 2005.6.

주 : (a) 비경쟁적(Non-rival)이란 1인의 인간에 의한 재화의 소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한 그 재화의 사용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비배타적(Non excludable)이란 공공재가 1인의 소비자에게 입수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유효하게 입수가능하고, 무임승차(free-riding, 즉, 어떤 소비자가 다른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제공에 대한 지불을 태만 하는 경우)로 일컬어지는 문제를 낳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공정성 및 다른 목적 (Equity and other objectives)

효율성의 개선은 자주 정부의 개입을 추진하는 것이나, 공정의 목적도 또한 커다란 고려사항이다. 개입에 대한 공정성 논의(equity argument)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개입에 대한 공정성 논의]

공정성 논의	설 명
수직적 공정(Vertical Equity)	유복한 개인가정에서 보다 빈곤한 개인/가정의 소득 재분배
수평적 공정(Horizontal Equity)	유사한 필요성을 지닌 개인/가정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체성(Social Inclusion)	누구든지 자신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소득의 기회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 공정(Intergenerational Equity)	현재 및 미래세대의 필요성에 균형을 가질 것

5. 기존 정책의 영향력 (Existing Policy Levers)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때에는 특정된 문제에의 대응을 시도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정책의 영향력이 이미 기능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당해 부처내외에 현존

하는 규제적 또는 비규제적인 해결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의 전망(policy landscape)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잠재적으로 유해한/불공정한 상황은 새로이 인식된 것인가?
- 제안과 중복할지 모르는 다른 현재의 개입은 무엇인가?
- 제안과 제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현재의 개입은 있는가?

유해한 상황(harmful situation)은 전부 새로운 것으로서 추가적인 정책의 영향력이 요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정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영향력이 자신 또는 다른 정부부처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때에는 더욱 개입의 필요성은 없고 특정된 시장의 실패 및/또는 공정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 기존의 영향력의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비례성 분석 (Proportionate analysis)

비례의 필요성은 적절한 개입, 데이터수집과 비용편익 및 관련분석(리스크의 고찰과 같은)의 선택을 포함한 영향평가의 모든 측면을 실증한다.

영향평가는 가능한 정부 개입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정책입안자가 고려하여야 할 것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절차로서, 사적부문, 제3섹터 및 공공부문에 미치는 모든 정부개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의 내용은 개입하려는 문제 및 제안의 규모가 비례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적은 제안(예컨대, 정기적인 보고요구를 단지 변경하는 단순한 제안)은 영향평가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모든 부분에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긴급시(예컨대, 공중위생을 이유로 한 사업장 폐쇄)에는 좋은 정책 개발절차에는 적어도 며칠 내에 제안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례적이지 않는 접근은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부처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하에 활동하는 때에도 비용편익분석의 어떤 요소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비례적인 요소가 있다면 정책은 심사되어야 한다. 비례성은 어느 정도로 분석이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었는지에 관한 가이드가 된다.

영향평가의 절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단계를 거쳐 가는 중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되고 또한 정확성이 개선되도록 세련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노력은 관여하는 자금, 불안한 성과(outcomes at stake) 및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례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향평가의 개발단계에서는 보통은 대안을 특정 및 사전 평가하는 때에만 요약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절차이후의 단계 - 특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거나 커다란 규제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분석은 보다 엄격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The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또는 회계감사원의 규제영향평가의 사후평가 보고서(National Audit Office report Evalua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2005-06)가 비례성분석의 원리에 관한 상세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의 방안(관리상의 부담 및 영향평가의 항) 및 공공부문 영향평가에 관한 비례절차의 상세한 가이드를 참조.

7. 공공부문 영향평가 (Public Sector Impact Assessments)

영향평가는 원래 규제적이 아니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공부문 또는 제3섹터에 비용이 부과되는 제안에 요구된다. 예컨대, 보고요건의 변경, 자금방출에 관한 기준개정 및 새로운 대상의 부담(imposition of new targets)은 전부 비용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할 영향을 수반한다. 그러나 비례적인 수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비용이 500만 파운드미만으로 정치적인 또는 언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야기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라면 개발/대안단계의 영향평가만 필요하다. 이들 단계의 설명에 관하여는 영향평가 가이드스를 참조.

제안이 공공서비스 만에 영향을 부여하는 것인지를 고려하는 때에는 영향평가의 절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내용은 관련 문제 및 제안의 규모와 비례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에 관하여 고려를 개시하는 당초에 개발 및/또는 대안단계에 있어서 영향평가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에는 정책문제의 특정, 증거의 수집, 정부개입의 논거의 고려, 목적의 특정 및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안의 고려가 포함된다. 업무집행 및 그것을 지지하는 인원에의 영향에 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초기단계에서 제안이 기업 또는 제3섹터에 비용을 부과하는지 또는 삭감하는지에 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영향평가 가이드스 가운데 특정된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완전한 영향평가에 착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안이 공공부문 만에 관련하는 것이라면 개발 및 대안단계를 넘어 영향평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閾值기준(Threshold criteria, 이하에 지정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는 개발 및 대안단계에서 장관에 대하여 평가항목, 범위 등의 절차를 정한 요약본(scoping submission)을 전달하고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각대안의 가능성 있는 리스크의 최량추정치와 제안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 및 편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특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은 1회성 및 평균연차비용 및 편익(1회성을 제외)을 제시하여 요약 : 분석 및 증거 페이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당면한 공공서비스 중에 또한 직원이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타 접속하는 공공 서비스중에 정책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직원집단에 대한 비용도 제시할 수도 있다. 비직원(Non-staff)의 비용도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예컨대, IT설정비용, 조달비용 및 자본금).

개발/대안단계의 영향평가가 기초된 때에는 그 성과를 閾值기준과 대조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제안의 화폐화된 비용이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완전한 영향평가가 착수되어야 한다(소규모회사 또는 경쟁에의 영향의 평가는 통상 필요하지 않다)
- 부처가 완전히 기능하는 Gateway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 따라 이 베이스라인의 숫자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제안이 정치적이거나 언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면 총비용이 500만 파운드 미만이라도 완전한 영향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비용 - 제안이 연간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비용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이라면 부처는 새로운 부담의 원칙(new burdens doctrine)하에 정해진 자금의 제공에 책임을 가지게 된다.

공무의 정의 - 2000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의 표1에서는 광범위한 공공기관의 일람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처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일람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역할(function)의 유형을 판정하기 위하여 부처의 법률고문에게 연락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의 Gateway - 완전하게 기능하는 Gateway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의 집행기관에게 공포되는 정책제안의 질과 양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전형적인 절차는 부처 내에서 중앙집권화 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직원으로부터의 Input를 통합하며, 각 제안의 표준 및 비례성을 기업의 요건에 대조시켜 삽입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발/대안단계의 영향평가는 Gateway의 기준과 통합하여도 좋으나, Gateway가 상기에 개설된 것과 다른 화폐적인 閾值의 설정을 결정한 때에는 BRE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무부(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Gateway Project Review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8. 실시 후 심사 (Post-implementation review)

실시후 심사는 실시된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입증한다. 이것은 정책 그 자체의 효과를 심사하거나 의도한 정책이 아직 바람직한가를 판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개발의 개시 시부터 심사에 제공되는 정보가 수집되도록 정책개발의 착수 시부터 실시 후 심사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변경을 실시한 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훌륭하게 정책목적에 적합하고 있는가 및 정부의 활동이 아직 필요한지를 후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개발 중에 심사를 위한 양호한 계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심사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에게 불확실성을 경감한다.

심사의 출발점으로서 영향평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심사는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개입 및 대안 페이지는 정책의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바람직한 효과의 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책이 언제 심사되는지를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3년 후에 정책의 변경의 심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주 생각되고 있으나, 이것은 정책 나름이다.

EU로부터 유래하는 법률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소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 후 심사의 일자를 위원회 자신의 법률의 심사의 예정과 결부하도록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시 및 시행의 방법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관행을 적어도 2개국의 주요가맹국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바람직한 효과의 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언제 정책이 심사되는가?
 년/월 : 2010년 05월

<u>장관의 승인</u> 협의단계영향평가용	<u>장관의 승인</u> 최종제안/실시단계평가용
-------------------------	----------------------------

심사에 관한 중요한 과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정책목적에 적합하고 있는가
- 비용 및 편익을 포함한 영향이 예기된 것이었는가
- 예견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 정부의 개입이 아직 필요한가
- 시행체제가 유효한 것을 준수레벨이 표시하고 있는가 - 아마 지금은 보다 낮은 영향이거나 보다 많은 리스크베이스가 될 수 있다.
- 심사기준 - 그것은 성문법에 의한(법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나 심사를 위한 정치적인 관여(commitment)가 있을 수도 있다.
-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수정 또는 다른 정책으로 하기 위한 기준
- 심사는 간소화 또는 규제철폐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 정책의 실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견해 및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지의 여부

9. 장관의 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정책의 책임을 지는 장관은 공적인 영향평가를 승인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의 영향평가의 요약 : 개입 및 선택 페이지의 사례를 보라.

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의거하여 유효한 대안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취지의 선언에 서명한다.

<p><u>장관의 선언</u> 협의단계영향평가용</p> <p>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입수 가능한 증거를 소재로 그것이 유력한 대안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p> <p>책임 장관의 서명</p> <p>연월일</p>	<p><u>장관의 선언</u> 최종제안/실시단계평가용</p> <p>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그것이 (a)정책이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또한 (b)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p> <p>책임 장관의 서명</p> <p>연월일</p>
---	---

영향평가의 최종적인 제안/실시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영향평가를 읽고, 다음 사항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선언에 서명한다.

- 그것이 정책에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을 것
-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을 것

부처는 초기단계에서 부처 경제전문가를 관여시켜 장관에의 건전한 조언절차를 행함으로써 이 선언을 촉진시켜야 한다.

내각사무처는 부처에 대하여 강화된 내부적 절차를 통하여 영향평가의 품질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언의 초안(draft advise)을 제공하고 있다.

조언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세밀한 배열은 부처에 따라 다르나, 부처의 절차에는 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정책관련사항에 대응하는 장관 또는 기타 성문법에 의한 의사 결정자에 대한 모든 제출물에는 영향평가의 중요한 견해를 요약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주된 경제전문가(Chief Economist)로부터의 기여를 포함하여야 할 요건을 편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가능한 절차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되면 좋다.

- 적절한 전문적/우수사례에 의한 실행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정량화 가능성 및 정량화 불가능한 비용, 편익과 기타 영향의 증거 및 분석의 사용
- 분석이 적절한 협의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을 것
-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적절한 기법 및 구조를 사용한 건전한 분석에의 접근
 - 비용 및 편익의 적절한 규모와 과제의 감도를 고려한 비례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착수되고 있다.

- 내각사무처의 영향평가 가이드스(Cabinet Office Impact Assessment Guidance), 재무부(HM Treasury)의 Green Book 및 기타 정부부처에 의한 관련 가이드스를 활용하여 영향평가가 정책의 주기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
- 조기단계에서 정책대안 또는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회(internal panel) 또는 같은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 그러한 위원회에는 개발의 조기단계에서 활용에 관여하는 정책과 직접 관련을 지니지 않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정부경제국(Government Economic Services, GES)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중심적인 과제 및 해결법(way forward)을 음미하는 기타 전문적 직업
- 적절한 경우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적 직업의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회(external panel)가 영향평가에 참여한 전체적인 수법과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열거된 증거를 심사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견고한 부처의 절차/승인의 절차
 - 정책결정자는 영향평가가 작성되어야 하는 정책의 개발단계 초기에서 부처의 경제전문가 및/또는 다른 관련 분석가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요건
 - (a)필요한 데이터의 특정, 조사 및 검증(commissioning), (b)견고한 데이터분석 및 견해의 요약제시와 (c)품질의 보증이 분명히 묘사되는 명확한 비용편익프로젝트계획

소관 부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 독립단체에 대해서는 통상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출조사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설명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senior official)이 영향평가를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영향평가의 최종제안 또

는 실시단계에서는 책임 장관이 선언에 서명할 것이 예기된다.

10.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와 Evidence Base

(Summary : Analysis & Evidence Page and the Evidence Base)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편익, 비용 및 효과를 포함한 고려되는 각정책대안의 중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기록한다. 완성사례를 참조.

Evidence Base

Evidence Base는 영향평가서식(Impact Assessment template)의 요약페이지에 부여된 회답을 지지하는 기술, 분석 및 조사의 혼합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vidence Base가 명확하고 투명한 숫자의 제시로 대강의 비용 및 편익(headline cost and benefit)이 어떻게 생겨 나는가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 제시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균형이 명확히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의 내역(disaggregate figures)의 사용은 독자가 영향평가의 요약페이지에 총계로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널리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외부의 검토에 감당하는(stand up to) 것이어야 한다 - 즉, 이것은 일반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관심을 가진 외부당사자가 데이터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재무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에 관한 Green Book의 가이드선스와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Evidence Base를 제시하는가에 관하여 부처 및 규제당국자는 매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일반 독자 및 외부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30페이지 이내의 분량이 권장된다. 표제(heading) 및 명확한 기초의 사용과 설명기술(explanatory notes) 또는 설명노트(explanatory memoranda)와 같은 다른 곳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

료의 중복을 피하는 것은 Evidence Base가 요약페이지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문서로서 지속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수의 대안(각각에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를 가진)이 고려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모든 대안에 명확히 대응하는 단일 Evidence Base가 있어야 할 것이다.

Evidence Base는 고려중인 정책대안 또는 제안에 관련하는 어떠한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에도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영향평가(specific Impact Assessment)의 사용이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는 Evidence Base에 제시되어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1. 정책대안의 생성 및 최종후보게재 (Generating and short-listing policy options)

정책개발단계의 조기에 서술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과 함께 모든 대안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개입 및 대안페이지는 고려되고 있는 정책대안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하의 가설사례를 참조.

- 영향평가의 최종적인 제안단계에서는 특히 달리 고려된 대안과 관련된 정당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선호되는 대안이 개재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책대안이 고려되었는가? 선호되는 대안이 있다면 정당화하시오

1. 개입이 없다.
2. 저배출소형기계도입을 위한 임의적인 산업code
3. 3년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저연소배출소형기계의 신기준
4. 신장비를 위한 조성금을 통하여 연소화를 배제하는 소형기계의 생산을 촉진
5. 연소의 생산을 억지하기 위한 과정금 도입

대안은 현상유지 또는 “최저한의 업무를 행하는” 상황(특히, EU지령에 관하여)으로 대조시켜 사전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행동이 행해지지 않거나 최저한의 활동이 행해지는 경우의 의미 있음을 도출하는데 일조가 되며, 다른 대안을 평가하는 데에 대조되는 베이스라인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정책대안만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대안을 3개 제시하는 요구는 이미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안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예컨대, EU지령을 대단히 한정된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전환하는)에는 보다 적은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개시 때에는 비규제적인 대안(예컨대, 업무인가, 품질마크 및 행동규범)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안의 최종후보안은 영향평가의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실현가능한 해결수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용과 편익의 고차원분석을 사용한다 - 부처 경제전문가가 추계기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재무부의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에 관한 Green Book 및 Toolkit의 기존정책의 영향력(existing policy levels)항목을 보고 아울러 규제 대체 안을 고려할 것

12. 대안의 사전평가 (Options appraisal)

이것은 영향평가의 중심적인 분석요소이다.

영향평가의 이 부분은 다음의 사안의 증거를 제공한다.

-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지향하려는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 최종적인 정책의 권장을 지지하고, 정책대안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지의 판정에 이바지가 된다.

현상유지 또는 “최저한의 업무를 행하는(do minimum)” 이상의 각 대안의 잠재적인 편익과 비용의 전부가 Evidence Base에 기록되고 관련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요약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이 EU의 지령(directive)의 실시와 관계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최저한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와 대조시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이 EU의 지령의 최저요건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이 사례는 Evidence Base 가운데 견실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철저한 협의도 또한 필요하다 - EU의 전환가이드(EU transposition guide)를 참조.

13. 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정보 (Cost and Benefit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Impact Assessment)

영향평가서식 및 가이드스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비용 및 편익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보는 통상 재무부의 Green Book 가운데 가이드스에 준거하는 계산에 의거하는 것이나, 의사결정자 및 이해관계자가 정책대안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 불변가격, 즉 현재의 일반적인 가격기준으로 표시되는 비용 및 편익
 - 1회성인 것을 제외한 연차평균으로서 나타낸다.
 - 1회성 또는 이행의 비용 및 편익 - 하단의 영향평가서식 참조.
 - 평균의 1회성 연차비용 및 편익과 이행이 발생하는 연수의 쌍방이 요약 페이지 내에 명기되어야 한다.

정책대안 3	
연차비용 1회성 1900만 파운드 연수 3년 (이행) 평균연차비용 320만 파운드 (1회성을 제외)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의 설명 및 규모 현재가격에서의 비용 \ 총비용(현재가격) 8240만 파운드

- 할인에 의하여 현재가치(Present Value terms)의 조건으로 나타낸 불변가격에서의 총비용 및 총편익. 순현재가치에 의거한 정보의 제시는 금액에 부합하는 가치에 의거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할인의 사례는 다음 표를 참조.

정책대안 3	
연차편익 1회성 적용하지 않음 연수 0년 (이행) 평균연차편익 6,400만 파운드 (1회성을 제외)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편익의 설명 및 규모 현재가격에서의 편익 \ 총편익(현재가격) 44800만 파운드

- 할인(Discounting)은 인플레이션과는 별개 개념이며, 시간선호(Time preference)의 사고에 의거하고 있다 -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후가 아니라 지금 받는 것을 바란다. Toolkit의 할인항을 참조. 재무부의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에 관한 Green Book 제5장도 할인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 요구되는 세 가지 유형의 숫자에 덧붙여 증가 또는 감소 및 부처의 관리상의 부담베이스라인(Admin Burden baseline)에 영향을 부여하는 어떠한 제안의 순영향도 계산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 정보는 2005년의 불변가격(constant 2005 price)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Toolkit의 관리상의 부담항에서는 영향평가를 위하여 수집된 관리상의 비용(Admin Cost)의 정보를 어떻게 2005년 가격으로 환산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Toolkit에 서술된 일반적인 원칙은 정책개발주기의 어느 곳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영향평가가 개발단계에서 초기의 “대강(back of the envelope)” 추정에서 대안의 세련, 협의 및 권장되는 정책

제안의 제시를 통하여 이동해감에 따라 분석의 깊이(depth of analysis)는 증가해 간다.

(1) 비용 및 편익분석 (Analysis of costs and benefits)

현상유지 또는 “최소한의 것을 행하는” 대안과 비교한 각 대안의 모든 비용 및 편익을 설명할 것.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다.

- 평균연차비용 및 편익(이행비용에 덧붙여)
- 순편익폭의 추정과 아울러 현재가치의 조건으로 나타낸 총비용 및 총편익의 추정
- 특정집단(특정산업, 사회집단 또는 지역과 같은)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정보의 요약
- 중요한 가정, 감도(sensitivity) 및 리스크
-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
- 규제 및 다른 개입의 영향에 관계하는 기타 일련의 질문(예컨대, 경쟁에 관하여 또는 다른 규모의 기업 및 제3섹터 조직에 관하여)

<< 요약 : 분석 및 증거 >>

정책대안 3	설명 : 소형기계의 새로운 기준
연차비용 1회성 1900만 파운드 연수 3년 (이행)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의 설명 및 규모 총비용(현재가격) 8240만 파운드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은 비용의 설명	
연차편익 1회성 적용하지 않음 연수 0년 (이행) 평균연차편익 5400만 파운드 (1회성을 제외)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편익의 설명 및 규모 총편익(현재가격) 4480만 파운드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은 편익의 설명
중요한 가정/감도/리스크

영향평가에 수반되는 Evidence Base는 위의 요약페이지에 포함되는 정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이 Evidence Base는 즉시 대안간의 비교 (comparisons)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요약된 형식으로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상호 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대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영향 받는 섹터 및 집단
- 특정 집단 또는 환경에 불균형적인 영향이 있는지
- 설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다른 집단에게 전가되더라도 각비용 및 편익은 1회성으로 기록될 것
- 가능한 한 화폐가치(monetary values)

정보 및 분석도 또한 있을 것 같은 영향과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의사결정에 정보를 부여하는데 충분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각대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또는 Eu지령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넘은) 비용 및 편익만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비용 및 편익의 고찰은 “배경”정보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다른 대안에 같은 세제체계(tax regimes)가 적용되므로 과세를 위한 조정이 요구되는 것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다른 대안에 적용되는 세제체계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우 그에 따라 대안의 비교에 왜곡이 발생하게 할 수는 없다. 재무부의 Green Book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명확히 하고, 추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정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리스크 및 낙관적 편향(optimism bias)을 반영하는 분석 및 조정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 낙관적 편향이란 특히 편익을 강조하고 그리고 타이밍과 비용을 과소하게 언급함으로써 프로젝트 사전평가자가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는 경향을 말한다. 재무부의 Green Book에서는 이 편향에 관한 명확한 조정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비용 및 편익을 예측하는 것은 종종 곤란하기 때문에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추계치는 범위(range)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 Evidence Base는 이 범위가 제시하는 것이 극단적인 가치인지 또는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성과의 범위인지를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 중요한 변수를 둘러싼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도 또한 대안의 사전평가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대안이 불확실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조정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 예컨대, 대안을 진행하는 것이 그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되는 데에는 편익이 얼마만큼 내려가는가(또는 비용이 얼마만큼 상승하는가), 필요가 있는가를 명시하기 위하여 “가치의 전환(switching value)”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부의 Green Book이 상세한 가이드스 및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총비용은 관리비용 또는 정책비용의 어느 것으로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Evidence Base 가운데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관리상의 비용추계치는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리상의 부담에 관한 정보에 삽입된다.

- 부담이란 조직이 통상의 업무에 착수한 때의 “통상의 업무(business as usual)”의 관리상의 비용에 추가되는 것임에 유의할 것.

제안의 영향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려는 조직 및 개인에게 이미 영향 받고 있는 어떠한 관련 또는 중복의 규제도 특정할 것. 각 대안이 가질 수 있는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 및 다른 규제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을 고려할 것.

기존법률을 100% 준수하거나 정책제안이 100% 준수된다고 상정하지 않을 것. 보다 낮은 차원의 준수의 영향을 고려할 것. 기존법률의 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된 새로운 규제 또는 관리상의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및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여 정책이 예상이상으로 양호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비용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것. 이것은 정부의 개입논거를 고려하는 때에 특정된, 잠재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상정도 상세한 설명 및 테스트(spell out and test any assumptions)를 행하고 아울러 사용된 어떠한 데이터의 정보원 또는 방법론에 관하여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는 다음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가 가능하다.

- 재무부의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재무규제자를 위한 실용적인 비용편익분석(Practical Cost-Benefit Analysis for Financial Regulators)

(2) 정량화 (Quantification)

비용 및 편익은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정량화되어야 한다(must be quantified).

공무에게만 영향을 부여하는 제안에는 閾値가 적용될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및 편익을 화폐화된 가치로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간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직접비용(direct costs) 즉, 각 대안의 정책 또는 개입에 직접 기인하는 비용은 화폐가치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통상 화폐가치는 간단하게 적시할 수 있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처 경제전문가와 협의(consultation with departmental economists)한 후에 경제적 평가의 기법을 사용한 화폐수량화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정량화(other form of quantification)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구조된 인명수, 노동력수요의 증가, 배출단계의 변화 또는 필요한 새로운 비품수 등. 이러한 척도는 대안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상대적인 비용 및 편익의 비교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영향평가서식에는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은 비용 및 편익을 기입하기 위한 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은 위의 사정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만 정성적 용어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3) 편익분석 (Analysing Benefits)

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편익을 특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안의 목적 및 대응하는 리스크에 관하여 고려함으로써 편익을 특정할 수 있다.

행동양식 내지 활동에 있어서 변화 또는 준수행위가 목표의 달성에 결부되었다고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할 것.

몇 가지 편익은 다른 것보다도 쉽게 검토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조기에 편익에 화폐가치(monetary value)를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부처의

경제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사례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시간 : 절약된 시간수에 곱한 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환경 : 사람들의 지불의사(청결한 하천, 신선한 공기 또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가) 또는 받아들일 의사(오염으로 고통 받는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명/건강 : 보다 장수하고/보다 건강한 인생을 위하여 지불의사의 추계를 사용할 수 있다. - 재무부의 보충가이던스, 공공에의 리스크의 관리 및 보건부의 정책사전평가 및 보건(Policy Appraisal and Health)을 참조.
- 사회적 편익 : 조사를 사용하여 예컨대,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사람들의 지불의사를 제시하는 것 및 사람들의 재구매동향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관한 견해를 부여해 갈 수도 있다.
- 훈련 : 회사에 있어서 훈련후의 수익증가 및 생산성 상승에 관한 조사 또는 훈련을 받은 요원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임금의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 간접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예컨대, 추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동양식에 있어서 변화, 예컨대, 고용비용의 삭감의 결과로서 보다 다수의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세제의 변경의 결과로서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재분배의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mpacts of redistribution)의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재무부의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는 인구 가운데 가장 빈곤한 제5계급(The poorest fifth)에의 편익은 중위의 계급에게 있어서의 가치의 약 2배의 가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 비용분석 (Analysing costs)

정책과 관리상의 비용(policy and administrative costs)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것은 대체의 정책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또는 특히 영향평가의 초기단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누락할 수도 있는 사안을 특정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 정책비용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비용으로서 간주할 수 있으며, 한편 관리상의 비용은 필요조건, 감시 및 시행, 준수의 실증 기타에 대한 익숙함에 관련된 비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 관리상의 비용평가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사용하여 기업 및 제3섹터에 부과되는 관리상의 부담의 비용을 특정할 것.
- 정책과 관리상의 비용을 비교하는 때에는 이 점이 정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및 따라서 그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에 관한 견해를 제공한다.

제안의 목표와 회사 및 소비자 또는 공공섹터에 행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고려함으로써 비용을 특정할 것.

비용을 특정한 시점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것을 정량화하여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 추계에 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

어떤 비용은 다른 것보다 쉽게 추계할 수 있다 - 예컨대, 인건비증가, 가능한 한 조기에 부처 경제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 비용에 화폐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사례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인건비 : (새로운 법률에의 적응, 훈련, 새로운 업무수행, 조사관에 회사를 안내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 등)
- 새로운 설비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비용 :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공식/비공식적인 협의는 여기에 가장 양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정보의 수집 및 준수의 증거제공 : 인건비에 더하여 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설비비용을 사용할 것. 관리상의 부담베이스 라인에 관한 항을 참조.
- 인가(license)를 얻기 위한 비용 : 이들에게는 수수료(fees) 더하기 관리상의 비용추계가 수반된다. 시행당국(enforcement authorities)은 견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행에 관한 가이드를 참조.
- 추가적인 법률, 회계 또는 기타 컨설턴트의 조언비용 : 재협의 또는 전문가동료(colleagues)의 경험은 유익할 수도 있다.
- 간접비용 : 즉, 개입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는 비용 -에의 고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업을 개시하는 회사의 감소, 소비자에 의한 선택의 삭감, 회사 간의 경쟁감소, 혁신의 감소 등과 같은 행동양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5) 비용 및 편익의 범위 (Coverage of costs and benefits)

일반적으로 비용 및 편익분석은 제안된 방안의 1회의 영향(first-round effect)만을 정량화하면 족하다.

- 예컨대, 만일 제안이 특정산업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보안설비의 구입을 요구한다면 회사가 새로운 설비를 구입 및 사용하는 비용(금전과 추가적인 관리 및 훈련시간의 양측에서)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경제비용을, 그리고 건강상의 편익(건강상의 개선

및 통계적인 구명수로서 측정된다)에 의하여 사회에 대한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떤 제안에는 1회의 분배효과(예컨대, 제안이 소규모회사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부여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편익이 발생한다면) 및 경쟁효과(예컨대, 제안이 산업계에서 가동하는 회사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면)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거시경제적 또는 2차적 효과(macroeconomic or second-round effects)의 언급도 적절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것을 정량화 또는 예상하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

- 예를 들면, 회사가 공급자 또는 고객에게 비용증가분을 전가하거나 지불임금 또는 수익을 삭감하는 정도
- 모든 제안은 중대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면직된 근로자는 다른 직업을 찾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 또는 가격에 있어서 변화에 따라 무역균형이 회복하므로 보통은 직업 또는 대외무역에의 효과는 분석과 관련이 없다.
- 이들 효과는 종종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고 추측적인 것이 되며 또한 전체적인 순수 경제적 효과는 없는 단순히 경제 가운데 자원의 재분배를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가 자주 있다.
- 그러나 중요한 사례는 영향을 받는 산업에 있어서 제안이 시장의 실패를 제거하는 경우에 관계된다. 예컨대, 법적인 문서에 전자서명의 사용을 인정하는 규제는 이전에는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요구에 의하여 방해받았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보다 효율적인 전개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거시경제적 또는 2차적 효과의 정량화를 시도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 만약 중대한 이행적 또는 지역적 효과가 있다면 이들에 관하여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예컨대, 고립한 지방에서 대규모 산업이 폐쇄하고 그 토지에서의 실업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 이들 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치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 그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계하는데 가치있는 충분히 크고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가진 제안도 몇가지 있다 - 예컨대, 최저임금의 도입. 제안이 이 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무부와 협의할 것.
- 2차적 효과가 비용 또는 편익에 부가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초기의 제안이 중대한 파급효과 또는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s)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산업용지에 있어서 상품의 보관을 제한하는 제안이 화물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도로지체는 기타의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 단순히 산업지출의 방향이 변화하였다는 만으로 중대한 2차적인 전체적인 효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예컨대, 만약 산업이 새로운 보안설비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그 설비의 공급자의 수입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산업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경제에의 전체적인 효과가 초래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다른 공급자가 있을 것이다.
 - 이것은 이익을 얻은 공급자가 정보기술, 바이오과학 또는 환경기술과 같은 혁신이 빠른 지식산업에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산업이 기술동향을 숙지한 후에 최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출유형에 규제에 따른 변경이 초래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Output, 투자 및 생산성에의 전체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된다고 추정된다.

- 선정된 2차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분석을 편향시킬 수 있으므로 2차적인 효과의 어떠한 고려도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전체적인 경제효과가 없더라도 분배효과는 중요할 수도 있으므로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 및/또는 Evidence Base 가운데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 예컨대, 제안은 지역간 또는 산업간에 다른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
 - 그러한 분배효과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상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득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의 양측을 일람(list both gainers and losers)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의 할인 (Discounting costs and benefits occurring over time)

거의 모든 규제제안이 비용을 부과하고, 장기에 걸쳐 축적되는 편익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과 함께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사용하여 추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용 및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함으로써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요약할 수 있는 “현재가치”의 수치가 제공된다.

할인의 사용은 사람들은 사후가 아니라 보다 빨리 좋은 것은 입수하는 것을 선호하고, 물품에 대한 지불을 가능한 한 오래 연장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규제의 제안에 관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 편익의 발생이 조기에, 비용이 연장되는 만큼 좋다.

- 권장되는 할인율은 3.5%이다. 비용 및 편익의 동향간의 차이의 현재가치의 산출은 대안의 순현재가치(NPV)를 제공한다 - 이것은 정부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의 기준이다.

- 현재가치 및 할인율표(Present values and Discount rate table)는 3.5%의 할인율의 사용과 함께 1,000 파운드의 현재가치가 장래 얼마만큼 하락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 현재가치 및 할인율 >>

기간(반년)	현재가치의 지불율(반년) = 3.5%
0	1.00 파운드
1	966 파운드
2	934 파운드
3	902 파운드
4	871 파운드
5	842 파운드
6	814 파운드
7	786 파운드
8	759 파운드
9	734 파운드
10	709 파운드

어느 만큼의 기간에 걸쳐 제안이 할인될 수 있는지는 정책의 제안에 따라 다르다. 10년간이라는 기간이 전형적이거나,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중심적인 비용이 기구구입이라면 그 기구의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다.
- 정책에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있다면 할인기간은 그 정책이 실행되는 연수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비용 또는 편익이 먼 장래에 나타난다고 생각되면 보다 장기간을 고려한 것을 좋을 수도 있다. 재무부의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의 부속문서 6을 참조.

이 절차는 부처 경제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재무부의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도 참조.

14. 전제의 테스트 (Testing your assumptions)

완전히 정확하게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대안의 영향을 평가하는 때 및 그것을 비교하는 때에는 추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최종적인 제언이 특정한 추측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확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측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 및 편익의 차원에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리스크 또는 불확실한 분야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확률을 지정할 수 있는 리스크(예컨대, 화재 또는 사고 리스크)에 관하여는 예기되는 비용 및 편익의 추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에 대하여 확률을 지정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 다양한 추측이 되는 다른 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도분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에 대한 다른 차원의 준수가 상세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준수가 항상 달성될 수 있다고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느 만큼의 차원에서 준수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는 자주 제안을 개발하고 있는 때에는 낙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편익 및 비용에 관한, 이 “낙관주의적 편향”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석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수법을 사용하여 편익 및 비용의 폭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폭은 행하여야 할 결정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 가져오지 않는 편익 또는 후에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비용의 관련 활동 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의사결정절차 가운데 고려되는 것은 중요하다.

추측의 심사와 리스크 및 불확실성의 취급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재무부의 Green Book :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 참조.

Evidence Base의 이 항을 명확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자료가 요약 : 개입 및 대안과 요약 : 분석 및 증거폐이지에 포함되고, 어떠한 관련 조사자료, 화폐화되고 있지 않은 영향(구체적 영향테스트를 참조)도 분석서류로서 첨부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15. 영향을 받는 부문 및 집단 (Sectors and groups affected)

각 대안이 다른 부문 및 집단에 부여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려되고 있는 대안은 어떤 집단에 대하여 유익한 영향을 가지며, 다른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정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에 의하여 영향 받는 모든 중요한 집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 특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초기단계(early stage)에서 비공식 협의를 사용할 것.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편익을 얻는 집단을 포함할 것.

- 예컨대, 오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다른 행동을 하여야 하는 오염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오염이 감소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보다 장기간의 간접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이 다른 집단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경우를 특정하고, 대안이 집단내 및 집단간의 분배에 변화를 부여하는지를 고려할 것.

다음 사항에의 영향에 관하여 고려할 것.

- 기업 - 특정산업, 회사유형 및 다른 규모의 집단
 - 기업부문의 다수는 예컨대, 엔지니어링 고용자연합(Engineering Employers' Federation) 또는 영국은행가협회(The British Bankers' Association)와 같은 영향평가의 본향의 완성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단체를 가지고 있다. Trade Association Forum은 특히, 정부부처가 영국의 산업단체(trade association) 및 기업부문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의 다른 부문(예컨대, 금융조언자 보다는 오히려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또는 공급망(supply chain)의 다른 부문(예컨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보다는 오히려 생산자)에 대하여 다른 영향이 있는 부문을 명확히 할 것.
 - 산업업종분류지침(SIC Code :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은 경제활동의 유형별로 기업체계를 분류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수단이다(지침개정이 2007년에 예정되어 있다). 이들 지침을 사용함으로써 명쾌함을 확실히 할 수 있다. SIC지침의 색인은 SIC지침 가운데 찾을 수 있다.
- 정책의 대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특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용적인 과제의 개념구성, 사례 및 고찰은 OFT Website에 제공되고 있다. 제안이 영향 받는 시장의 어디에서 경쟁을 저지하고,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회답을 얻기 위한 도움은 별도 항의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를 참조.
- 제3섹터의 조직 : 정책의 대안은 자발적 및 자선적인 부문에도 또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하게 고려되는 것이 중요

하다. 정부내의 다른 곳에 있는 동료들이 이들 조직과 이미 접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예컨대, 내각사무처의 Office of the Third Sector), 그들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신 조직에 직접 연락을 할 것. 국립자원봉사조직협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집단(vulnerable group) 및 평등을 호소하는 집단(e-quality group) - 구체적 영향테스크도 참조.

16. 리스크, 불확실성 및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 (Risk, uncertainty and unintended consequences)

리스크 및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의 결과 - 리스크에 의하여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가 - 를 설명할 것. 영향평가서식(Impact Assessment template)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중요한 감도 및 리스크를 강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다음 사례 참조). 영향평가에는 각대안의 모든 예상되는 리스크의 가치의 산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각대안이 어떻게 장래의 불확실성에 처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기타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은 편익 연소중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나, 소형기계산업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p>			
<p>주된 상정/감도/리스크 제안은 2010년까지 90%의 준수를 상정한다. 연소중독사감에 따른 편익은 불확실하며 10년간에 걸친 순편익은 1억 8천만~5억 14백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준수비율이 50%라면 순편익은 1억 8천만 파운드가 된다.</p>			
<p>가격베이스연도 2007년</p>	<p>기간연수 10년</p>	<p>순편익폭(NPV 순현재가치) 1억8천만~5억 14백만 파운드</p>	<p>순편익(NPV 최량추정치) 3억 65백만 파운드</p>

이들 리스크를 삭감하기 위하여 대안의 수정을 고려해도 좋다. 상세한 조안은 다음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 재무부에 의한 일반시민에 대한 리스크관리 : 사전평가 가이드(Managing risks to the public : appraisal guidance)
- 전략팀 보고서(Stratgy Unit Report) 리스크 :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능력의 개선(Risk : Improving government's capability to handle risk and uncertainty)

이에 추가하여 대안 각각에 관하여 가능성 있는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고려할 것. 이것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나 조기에 이에 관하여 고려를 개시한다면 문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보다 성공리에 정책목적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진규제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에 의한 “Risk, Responsibility, Regulation : Whose Risk IS IT Anyway?”는 영국의 리스크관리의 방법은 규제의 과잉으로 이끌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기된 가치가 다른 대안간의 리스크의 영향에 관한 양호한 이해를 얻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한편 장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대안간에서 선택된 것에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감도분석에 관한 정보를 참조.

17. 실 시 (Implementation)

영향평가의 초기단계에서 실시, 감시(Monitoring) 및 집행(delivery)에 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정책이 실시되는 기일의 명기를 요구하고 있다(다음 사례를 참조).

정책/대안의 지리적 범위는?	영국 및 웨일즈
정책이 실시되는 기일은?	2007년 10월
어느 조직이 정책을 실시하는가?	소형기계청
이들 조직을 위한 시행비용의 연차총비용은?	500,000 파운드
시행은 Hampton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

Evidence Base는 각 대안에 관하여 중심적인 과제를 다루는 실시 및 집행계획의 개요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자격(Ownership) - 예컨대, 누가 실시책임을 지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 실시의 목표 - 성공의 기준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목적 및 성과에 해당된 초점
- 실시에정표 - 중요한 사항결정점 및 이정표. 약간의 유연성을 형성할 것.
- 이해관계자의 식별 - 누가 실시에 관여하고, 누가 보다 광범위에 걸쳐 영향을 받는가?
- 커뮤니케이션전략 - 영향을 받는 자, 특히 소규모기업 및 기타 조직에 대한 조기경고의 여유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
- 리스크분석 - 각 대안의 집행 및 실시에 관한 리스크관리를 고려할 것
- 시행 및 감시는 정책목적의 집행 및 성공이 어떻게 심사되는지에 영향을 부여할 것.
- 상무부(OGC,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OGC Gateway Reviews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그 목적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검토한다. 상세는 OGT Toolkit에서 볼 수 있다.
- 실시가 다른 정부부처 및 검사기관과 종합적인 부담에 의한 것을 포함, 기존의 주도권(existing initiatives) 가운데 어떻게 적합 하는가를 고려할 것.
- 영향평가 가이드는 공통개시일(common commencement dates)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18. 모니터링 (Monitoring)

정책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효한 감시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이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준수차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영향평가 가운데 각 대안에 관하여 제안되는 감시절차를 설명할 것. 기준을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Measurable), 달성가능(Achievable), 관련성 있는(Relevant) 및 기한을 정한(Timebound) 것으로 할 것(SMART).

기존의 감시구조에 배려할 것 -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는 복수의 감시활동에 직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것.

준수를 전체적인 정책목적 및 집행의 성공지표로 대조시켜 평가할 것. 무엇이 준수로서 보여지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에 관하여 명확히 할 것.

각 대안의 감시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개설할 것. 준수 및 감시의 규제를 받는 자의 비용과 이것이 어떤 집단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부여하는가에 관하여 고려할 것.

감시의 빈도(frequency) 및 그것이 어떻게 보고되는가를 설명할 것.

장래의 정책입안에 이바지하도록, 제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로부터의 어떠한 고충도 기록하는 Feedback 메카니즘의 설치를 고려할 것.

19. 시 행 (Enforcement)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정책이 실시되는 일자를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다음 사례 참조).

정책/대안의 지리적 범위는?	영국 및 웨일즈
정책이 실시되는 기일은?	2007년 10월
어느 조직이 정책을 실시하는가?	소형기계청
이들 조직을 위한 시행비용의 연차총비용은?	500,000 파운드
시행은 Hampton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

정책결정자는 시행의 대안을 고려하는 때, Hampton Review에 제시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제시되고 있다.

시행 : Hampton Review 원칙

- 규제당국 및 전체로서의 규제제도는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리스크접근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규제당국은 행한 결정 가운데 독립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에 관한 설명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모든 규제는 단단하게 이해, 실행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되는 때에는 관심을 가진 모든 당사자와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 이유 없이 조사(inspection)를 행할 수는 없다.
- 기업은 불필요한 정보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같은 정보를 2번 부여할 필요는 없다.
- 지속적으로 규제를 타파하는 소수의 기업은 신속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응하여 의미 있는 제재에 직면하여야 할 것이다.
- 규제당국은 권위가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조언을 용이하게 싣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때에는 관리상 부과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규제당국은 올바른 규모 및 능력의 범위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자가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규제당국을 창설할 수 없다. 활동의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성장을 허용 또는 장려하는 것이며, 명확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점을 규제당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의 과제에 관한 가이드نس는 Hampton Review에서 부여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정책을 시행하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자가 있는가?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조기단계에서 잠재적인 시행당국(potential enforcement authorities)을 관여시켜 이를 영향평가 가운데 설명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행체를 만드는 제안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기존의 실행청(agency)이 새로운 제안의 시행을 왜 실행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할 것. 새로운 시행체의 활동은 또한 어떠한 기존의 실시청의 활동과도 적절하게 통합될 필요가 있다. 직원의 채용 및 연수와 같은 과제도 고려에 들 것. 재무부 및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으로부터의 승인도 필요하다.

20. 제 재 (Sanctions)

Hampton 원칙에 개설되는 시행의 리스크에 의거한 수법과 일관되는, 현대의 목적에 적합한 일련의 유연한 제재도구에의 접근을 규제

자가 확실히 가지는 것을 지향한다는 다수의 제안을 하는, Macrory Review을 고려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소권이 소려 되고 있는 것이라면 조기단계에서 헌법문제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이 제안된 어떠한 범죄규제에 관해서도 내무부 및 헌법문제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새로운 범죄규제는 경찰 및 법원의 업무증가와 연계되며 법적 지원의 비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형사상의 제재 또는 민사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안이 법원 및 법적 지원의 작업량에 초래되는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제안개발의 조기단계에서 헌법문제부와 연락하여야 한다. 법적 지원영향테스트(Legal Aid Impact Test)에서 상세한 것을 볼 수 있는 법적 지원영향테스트를 완성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절차는 아니나, 제안에 관한 정책의 승인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재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인권보호법(Human Rights Act)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EU지령의 전환 (Transposition of EU directives)

EU지령의 전환에 관한 정부정책은,

- 기업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영국의 정책 목표에 따라 시간대로 지령의 목적을 달성할 것.
-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편익이 명확히 비용을 상회하는 것이 아닌 한 과잉실시 - 금도금(gold plating) - 를 피할 것.

영향평가는 정책목표에 따라 지령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문석 및 증거페이지

에서는 실시가 EU의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다음 사례 참조.

실시는 EU의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가?	예/아니오
-------------------------	-------

EU지령의 실시제안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는 때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두 가지 점으로는,

- 지지하는 증거는 지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려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전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령이 불명료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향평가는 이들 다른 해석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증거는 지령에 의하여 요구된 것보다도 제안된 실시대안의 어느 것이 중요한 부담의 강제에 연계되는 가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선택된 정책대안이 과잉실시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비용편익분석 및 기업과의 광범위한 협의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내각사무처의 “전환입문 : 유럽지령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Transition Guide : How to implement European Directives Effectively)”에는 EU규제제정의 처리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직원 및 법률가를 위한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EU지령가이드스.

공동결정 및 위원회운용절차(Codecision and Comitology Procedures) 등과 같은 다른 EU의사결정절차에 관한 가이드نس는 유럽사무국 GSI 사이트를 참조.

부처가이드نس의 출처를 조사하여도 좋다.

22. 보상의 간소화(상쇄) (Compensatory simplification : offsetting)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제안된 상쇄방안의 가치를 연간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싶은 때에는 기존의 요건을 간소화하거나 제거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 목표는 새로운 조치의 창출과 기존요건의 삭감사이에 보다 양호한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다.

모든 주요한 제안(major proposals)에 관하여 상쇄하는 간소화방안을 특정하여야 한다. 간소화를 위한 계획은 가능한 때에는 절대로, 새로운 제안과 개괄적으로 동등한 것임이 중요하다. 규제설명책임을 위한 위원회(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는 만족할 만한 보상적인 간소화방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도출한 때에는 규제제안을 각하할 수도 있다.

다른 모든 제안(all other proposals)에 관한 상쇄방안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도 기대된다. 일괄 규제법안(regulatory package)의 일부로서 간소화가 제안될 가능성은 항상 영향평가 가운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적인 간소화방안에 관한 범위가 없는 때에는 영향평가는 이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간소화계획(Simplification Plans)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제안은 새로운 규제제안으로서 이중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나, 부처가 매년 갱신하는 다음 계획 가운데 포함할 수 있다. 간소화계획에 관한 상세한 정보 참조.

(1) 조치방안의 특정 (identifying measures)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음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규제적 환경, 특히 새로운 조치방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영역을 개관할 것.
- 다음 사항을 스스로 묻는다.
 - 기존규제 가운데 제안이 어떻게 적합하는가?
 - 그곳에 어느 만큼의 규제가 있는가?
 - 기존규제의 정책목적은 달성되고 있는가?
 - 시행은 효과적인가?
 - 기업의 우려사항(만약 있다면)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제안은 기존요건을 제거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한 조기에 경제전문가, 통계학자 및 과학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

사람들이 논평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상쇄하는 간소화에 관한 제안의 상세는 정식 협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처 가운데 기존의 전달경로도 유효하게 이용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화의 제언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 예를 들면, 관리상의 부담에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제거, 기존요건의 통합 및 중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규제의 합리화를 포함한 일련의 간소화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은 비입법상, 예를 들면, 관리상의 부담을 삭감하거나 집행을 개선하기(상세는 다음을 참조) 위한 시행 및 검사의 실시관행의 변경과 같은 것이라도 좋다.

(2) 영향의 평가 (Assessing impacts)

간소화의 제안 또는 복수의 제안이 새로운 규제방안의 비용을 상쇄하는 정도 및 기존의 조건이 제거되는 것의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여

야 한다.

- 이 영향평가는 고려되고 있는 조치와 비례되어야 할 것이다. 커다란 제안의 경우 또는 상쇄조치가 다른 조치분야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제거 및 경쟁에의 영향이 충분히 평가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중점조치 (targeted measures)

이해관계자가 간소화조치의 특정 및 평가절차에 몰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간소화의 조치가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그 조치가 그들의 분야에서 규제의 부담을 삭감시키는 실제적 영향을 가진다고 확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협의문서에는 보상적 간소화의 제안의 평가의 상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명확히 간소화의 조치에 의하여 초래된 비용의 삭감이 새로운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부여하는 동등한 규제분야에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로운송산업에 영향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제가 같은 부문의 부담을 삭감하는 간소화조치에 의하여 상쇄되도록, 위에 언급한 단계는 그러한 간소화조치를 특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확대의 범위 (Widening the scope)

같은 규제분야에 영향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상쇄조치를 특정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왜 특정할 수 없는지에 관한 이유를 기술한 설명을 포함하여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폭넓은 산업부문에 대하여 다른 간소화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보상적 간소화조치 (Compensatory Simplification Measures)

간소화라는 일반적인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규제철폐 : 이전에는 규제되었던 체제의 보다 많은 자유화와 연관되는, 법령집으로부터의 규칙의 제거
- 통합 : 다른 규제를 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리한다. 투명성과 이해를 개선함으로써 준수비용이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 합리화 : 부문특유의 다양한 “수직적”인 규제를 치환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입법(horizontal legislation)(부당하게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반관세와 같은)을 사용하는 것 및 중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규제를 해소할 것.
- 명료화 : 요건의 명료화 또는 누락 및 착오의 정정. 법률에 관한 우려 및 애매함을 해소시켜 준수비용을 삭감한다.

간소화의 조치는 또한 예컨대, 관리상의 부담을 삭감하기 위하여 시행 및 검사의 실시관행을 변경하려는 비입법상의 것이라도 좋다.

- 선진규제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의 “Less is More” 보고서는 관리상의 부담을 삭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사례일람의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은 사례는 2006년 간소화계획(Simplification Plans)의 정부의 요약에서 볼 수 있다.

(5) 탄소가스영향평가 (Carbon Impact Assessment)

2003년부터 정부는 탄소가스영향평가를 환경적 영향의 평가의 불가결 요소로 하는데 전념하였다. DEFRA 및 재무부는 정책대안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에 중대한(significant) 영향을 부여하는지를 정책결정자가 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가이드נס를 개발하고 있다. 이 가이드נס는 검토가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을 시사 하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가 계속 최초의 검토단계의 실시(제1단계)에 의하여 구성된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탄소가스의 비용이 화폐화되고 다음 사안에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관련란에 명확히 특정한다.
-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비용의 전체적인 요약의 요소로서 삽입한다.
- Evidence Base 가운데 상세히 설명한다.

DEFRA의 기후변동의 영향(impacts on climate change) 및 재무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에 관한 Green Book의 가이드던스 부속문서 2 참조.

온실효과가스배출의 변화의 가치는?	무시할 수 있음/£
--------------------	------------

23. 경 쟁 (Competition)

제안의 영향이 경쟁에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를 특정하고 이 영향이 중대한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은 경쟁의 현안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률의 제안에 관하여 장관 및 담당자에게 권고하는 법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OFT는 제안이 경쟁의 현안사항을 제기하는지를 담당관이 판정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는 경쟁의 판정기준(competition filter)을 개발하고 있다.

규제제안은;

-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가?
-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가?

-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가?
- 공급자가 활발하게 경쟁을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가?

어떻게 경쟁가치를 행할 것인가에 관한 가이드نس는 OFT의 경쟁평가 가이드نس(OFT Competition Assessment Guidance)에서 볼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는 경쟁평가의 성과는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요약되어 Evidence Base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영향 받는 시장의 특정

이 항의 목적은 제안에 의하여 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규제외 효과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개선하는 것을 돕고 유용한 협의를 위한 양호한 기반도 또한 제공하는 것으로서 영향 받는 시장을 조기 단계에서 특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market)이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 가운데 같은 상품의 일군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시장 가운데”의 공급자는 따라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품을 공급하는 자이다.

- 규제에 의하여 영향 받는 시장을 특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특정 하는 것이다.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특정되면,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규제를 받아 적어도 일부 소비자 또는 공급자가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의 대체로 하는 것이 당연히 고려되기 때문이다.
- 영향 받는 시장의 지리적인 특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은 지방적인, 지역적인,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것일 수 있다.
- 영향을 받는 시장을 특정 하는 때 관련시장(related markets)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

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연쇄 및 그것이 규제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성금(Subsidies)은 특히 조성금이 크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의 선택된 것만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 같은 활동에 착수하고 있는 회사간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 OFT의 조성금 가이드선스(subsidy Guidance)는 정부부처가 재무부 Green Book 또는 Green Book에 의거한 가이드선스에 따라 조성금의 사전평가에 착수하는 때에 경쟁에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조성금의 거의 전부가 국고보조금이며, 따라서 유럽국고보조 규정(European State Aid rules)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규정은 OFT의 가이드선스의 적용에 관계없이 가맹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2) 상세한 정보

처음에 정책결정자는 제안의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관하여 부처경제전문가와 대화하는 것을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념적인 구조의 상세를 제공하고 시장의 정의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제를 심의하는 포괄적인 가이드선스는 OFT의 Website OFT Market Guidance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경쟁의 과제에 관한 상세 또는 원조에 관하여는 OFT의 규제심사팀(Regulatory Review Team)에 전화 020 7211 8500dp 연락할 것.

24. 조직당 평균연차비용 (Average annual cost per organisation)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는 기업 및 제3섹터에의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규모의 조직에 관하여는 고

려되고 있는 대안 또는 제안의 조직당 추계연차비용(1회성 비용을 제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세 -예를 들면 어떠한 이행비용도- 는 영향평가를 위한 Evidence Base에 포함할 수 있다.

조직당 연차비용 (£-£) (1회성비용을 제외)	극소 136	소규모 349	중규모 561	대규모 774
이들 조직 중 면제되는 것은 있는가?	아니오	아니오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소규모기업국(Small Business Service)은 다른 규모별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가이드스와 소규모회사영향테스크(Small firms impact test)를 포함한 추정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5. 관리상의 부담 및 영향평가 (Admin burdens and Impact Assessment)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향평가에서는 불변가격(즉, 현재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의 “현실가격(real terms)”으로 표현되는(재무부 Green Book 5. 42항 참조) 비용 및 편익의 계산을 요구한다. 관리상의 부담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영향평가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제시되는 총계비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들 과제를 고려하는 때 정책결정자에게는 만약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부처 또는 기타 경제전문가와 협동할 것을 권고한다.

연차비용 1회당	파운드	연수 :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
평균연차비용 (1회성을 제외)	파운드		해당하는 곳에 관리상의 부담의 금액을 포함할 것
			총비용(PV(현재가치))
			파운드

새로운 규제 또는 기타 새로운 개입에 있어서 관리상의 부담

영향평가는 정부가 영국의 경제전체에 걸친 관리상의 부담의 최신 기록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들 부담의 실적조사는 2005년 5월에 착수되어, 각 부처는 stock database에 독자의 베이스라인을 관리하고 있다. 베이스라인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비용모델로부터 산출된 관리상의 부담도 2005년 가격으로 계산되어 영향평가서식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계산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서식의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는 별도란을 두고 있다.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2005년 가격)		
증	£	감 £ 순영향 £(증 - 감)
중요 :	연차비용 : 불변가격	(순) 현재가치

새로운 규제 또는 기타 새로운 개입에 관한 영향평가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측정에는 세가지 단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영국표준가격모델 매뉴얼(UK Standard Cost Model Manual)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관리상의 부담 및/또는 관리상의 부담을 삭감을 계산한다.
- 적절한 deflator(아래의 항 참조)를 사용하여 이들 숫자를 2005년 가격으로 조정한다.
- 인화된 숫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안의 2005년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을 계산하고,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란(아래를 참조)에 기입한다.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스 및 Toolkit 전문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2005년 가격)		
증	₩	감 ₩ 순영향 ₩(증 - 감)
중요 :	연차비용 : 불변가격	(순) 현재가치

관리상의 부담에의 변화(어떠한 1회성의 이행비용도 포함)의 순영향(net impact) (불변가격으로)도 또한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 상부의 연차 및 총비용의 총계산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아래 참조). 적절하다면 계산의 기초를 영향평가에 포함되는 Evidence Base 가운데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차비용 1회성 파운드 연수 평균연차비용(1회성 제외) 파운드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 관리상의 부담금액을 불변가격으로 포함할 것 총비용(PV(현재가치)) 파운드
연차편익 1회성 파운드 연수 평균연차편익(1회성 제외) 파운드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편익 관리상의 부담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총편익(PV(현재가치)) 파운드

관리상의 부담에 있어서 삭감은 비용에 있어서 삭감으로서 -편익의 증대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변화에 따른 영향도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편익란이 아니라 비용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의 조정

고려되고 있는 제안의 중대함을 반영하는 가격조정의 절차에는 적합한 접근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담이 적은 영향평가

가 행해진 때와 2005년간에 실질적인 가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된 금액을 부처베이스라인에의 영향을 추계하기 위하여 사용 -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결국 어떠한 계산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강력한 증거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환산율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상 부담의 금액은 단순한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비율의 사용으로 충분하다. 다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균수입지수 (Average Earnings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재화에 대한 비용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소비자가격 deflator(예컨대, RIP 또는 CPI) 또는 생산자가격지수(Producer Price Index)가 적절할 수도 있다.
- (내부적인) 임금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간 및 수입의 연차조사(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 : ASHE)”로부터 임금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수법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부처의 경제전문가 또는 선진규제팀(Better Regulation Unit)에 연락을 하기 바람.
-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GDP 가격deflator(국가통계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의 Website에 제시되어 있는 시리즈 식별표(Series Identifier)가 적절할 수 있다(상세한 정보는 재무부의 Website 참조).

간소화의 제안에 있어서 관리상의 부담

관리상의 부담을 삭감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하는 간소화의 제안을 취급하고 있다면(즉, 제안에 관련하는 기타 관리상 또는 정책비용

또는 편익이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영향평가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의 모든 항목을 완성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행한다.

- 관리상의 부담의 stock database를 사용하여 간소화의 제안의 2005년 관리상의 부담 베이스라인에의 영향을 계산한다.
-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란에 기입한다(다음 사례 참조).
- 제안으로부터 기타의 영향이 없음을 Evidence Base 가운데 명시한다.

제안에 의하여 초래된 합계 증가액을 기입하십시오	제안에 의하여 초래된 합계 감소액을 기입하십시오	부처베이스라인에의 순영향(차이)을 기입하십시오
----------------------------	----------------------------	---------------------------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2005년도 가격)		
증 530만 파운드	감 2260만 파운드	순영향 -1730만 파운드

이 사례는 간소화의 제안만에 관련하므로 통상은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 상부의 연차 및 합계 비용 및 편익란을 완성할 필요는 없다.

관리상의 부담삭감의 제안이 1회성의 이행비용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주의깊게 정량화되고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 상부의 1회성 이행비용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책대안	설 명
연차비용 1회당(이행)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의 설명 및 규모 관리상의 부담을 간소화에 의하여 초래된 1회당 이행비용을 포함

* 추가정보

표준비용모델(SCM)의 적용을 지지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는 내각사무처 Websi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영국표준비용모델 매뉴얼(The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 표준비용모델 매뉴얼 부록(Standard Cost Model Manual Annexes)
- 관리상의 부담 - 삭감방법(Administrative Burdens - Routes to Reduction)
- 국제표준비용모델 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SCM Network)

본 항목에 관한 상세한 질문은 regulation@cabinet-dffice.x.gsi.gov.uk로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26. 구체적 영향테스트 (Specific impact tests)

정책개발이 상호 연계되고 개별 정책제안이 정부의 폭넓은 정책목적을 고려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련의 테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몇 가지 테스트는 정책결정자가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 것에 불구하고, 비용 및 편익을 화폐화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타 테스트는 정책결정자에 의한, 화폐화되지 않는 비용 및 편익의 특정 또는 정책제안의 다른 영향의 특정을 가능케 한다.

영향평가의 첫 번째의 초점은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비용 및 편익분석과 정량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Toolkit 가운데 대안 및 사전평가에 관한 가이드نس(Toolkit's guidance on appraisal of options)에서 볼 수 있다.

영향평가서식 가운데 구체적 영향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정부부처에 의하여 개발되어 부처의 가이드نس에 의하여 실증된 일련의 테스트를 요약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추가적 고려점을 제시하는 다음의 보다 상세한 표를 참조하여 보완해도 좋다.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서 구체적 영향테스트에 관한 입수가능한 부처의 가이드스를 조사할 것을 권장한다. 성문법에 의한 의무가 있는 경우(다음 참조)를 제외하고 정책결정자는 심사의 착수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전체적인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된 것이며, 그리고 명확한 초점으로 비용 및 편익이 조사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수의 심사는 더욱 평가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정책결정자가 간소하게 판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최초의 조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5가지 원칙(fiv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정책결정자가 고려하는데 특히 이바지한다. 이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인 한계 가운데에서의 생존
- 강력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사회의 확보
- 지속적 경제성장
- 선진 통치의 추진
- 건전한 과학의 책임 있는 사용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부전략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참조. 기타 관련 정보는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에서 입수가능하다.

(1) 구체적 영향테스트 : 체크리스트 종합 참조.

모든 정책제안에 있어서 인종평등, 남녀평등 및 장애자의 평등의 평가에 착수하는 것은 법률상 요건이다.

(2) 구체적 영향테스크의 취급

다음은 구체적 영향테스트의 취급에 관한 안내가 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영향은 서식에 일람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순번으로 배열되어 있다 - 아래 사례 참조.

경쟁영향평가(Competition Impact Assessment)의 목적은 제안의 영향이 경쟁을 지지하는 것인가(pro) 지지하지 않는 것인가(anti)를 특정하고, 이 영향이 중대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규제는 실제로 경쟁을 추진시키는 것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전화번호 portability에 관한 규제에 의하여 고객이 다른 전화통신회사로 바꾼 때에도 같은 전화번호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은 전화회사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다.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Small Firms Impact Test)에는 두가지의 주된 단계가 있다.

- 제1단계 :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SFIT) 개시
- 제2단계 : 소규모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안에 관한 과제의 특정 및 보다 충분한 탐색

Small Firms Impact Test에서 입수 가능한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의 충분한 가이드는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가 어떻게 영향평가의 절차에 적합 하는가를 발견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안이 소규모회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책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소규모기업국(Small Business Service, SBS)에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SBS는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연락처는 전화 020 7215 8009 또는 regulation@sbs.gsi.gov.uk

구체적 영향테스트 -체크리스트-

다음 표를 사용하여 정책대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폭넓게 고려하였는가를 명시할 것.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심사결과도 주된 Evidence Base에 포함할 것을 확실히 할 것 ; 기타 결과는 부속서류로서 족함.

착수되는 Test 유형	Evidence Base 가운데 성과가 있는가?(예 / 아니오)	성과는 부속문서로 되어 있는가?(예 / 아니오)
경쟁평가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		
법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가스평가		
기타 환경		
건강효과평가		
인종평등		
장애인평등		
남녀평등		
인권		
농촌지역에의 영향		

새로운 형사상의 제재 또는 민사법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때에는 언제나라도 법원 및 법적 지원의 작업부담에의 결과에 관한 논의와 합

의하기 위하여 제안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법무부 Civil Legal Aid Strategy Team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들 상황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는 법적지원 영향테스트(legal aid impact test)를 완성할 것이 요구된다. 이 Test의 상세는 **Legal Aid Impact tests**에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하여는 위의 지속가능한 발전부분을 참조.

환경영향테스트(Environmental impact tests)는 제안의 환경적인 결과에 관한 부처의 이해 및 정량화(몇 가지 경우에는 화폐화를 통하여)를 가능케 한다.

- 2003년부터 정부는 탄소가스 영향평가(carbon impact assessment)를 환경적 영향평가의 불가결 요소로 하는 것에 전념하였다. 상세는 비용 및 편익의 사전평가 가운데 탄소가스영향에 관한 자료를 참조. DEFRA 및 재무부는 정책대안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책결정자가 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가이드언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가이드언스는 검토가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가 계속 최초 검토의 실시(initial screening exercise, 제1단계)로 구성된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탄소가스비용이 화폐화되어 요약 : 분석 및 증거페이지에 요소로서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 고려될 수 있는 기타 환경적 과제에는 기후변동에 따른 영향, 폐기물관리, 경관, 물 및 홍수, 생식환경 및 야생생물과 소음공해가 포함된다. Defra guidanc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재무부 Green Book 중앙정부의 사전평가 및 평가 부속서류 2 참조.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건강 및 후생(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특히 그것이 어떻게 건강상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다. 건강이 제1의 목적이 아닌 비건강부문의 정책 및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건강 및 후생에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HIA는 그러한 정책 및 프로젝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 및 후생이 유지 또는 강화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건강 및 후생을 위한 개괄적인 질문은 Health Impact Assessment에서 볼 수 있다.

인종의 평등(Race equality) - 2000년 인종관계개정법(Race Relations Amendment Act)의 규정에 의한 법적의무의 일부로서 정부부처를 포함한 지정 공공기관은 제안하는 정책이 인종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 및 협의를 하기 위한 조율(arrangement)을 설정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상세한 조언은 Race Equality Impact Assessment를 참조하십시오. 정책제안이 인종의 평등에 아무런 영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영향평가의 본향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자의 평등에 관한 영향평가는 기존 또는 제안된 정책 내지 실행관행의 영향이 장애자의 평등에의 결과와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평가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장애자에 대한 실제 내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검출과 마찬가지로 간과되었거나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기회를 탐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세한 가이드نس는 Disability Equality Impact Assessment에서 볼 수 있다.

2007년 4월 6일부터 공공기관은 새로운 법률, 정책, 고용관행 및 업무집행에 있어서 변경이 남성 및 여성에 부여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نس는 Gender Impact Assessment에서 볼 수 있다.

제안은 인권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상세는 **Human Right**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의 영향을 음미하는 것(Rural Proofing)은 국내의 모든 정책이 농촌의 사정 및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담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개발되는 때에 정책결정자는 체계적으로 다음 사안을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정책절차 가운데 의무적인 부분이다.

- 특정된 농촌의 사정 또는 필요성을 이유로 정책이 농촌지방에서 다른 영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 이들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적절하게 평가한다.
- 필요에 응하여 농촌지방의 필요성 및 사정에 적합한 해결책을 가지고 정책을 조정한다.
- 상세는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에서 볼 수 있다.

27. 관련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s for linked policies)

어떤 경우에 하나의 법안 또는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으나 포괄적인 권한 가운데 수록된 주요조치들(a basket of measures) -교육기능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에 의하여 시작된 Sure Start policy initiative가 이 사례이다- 을 취급할 수도 있다.

이들 상황 가운데에는 일관하여 모든 조치를 다룬 단일 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각각의 제목에 관한, 적절히 심도 있는 영향평가를 그와 관련되는 단일 요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부처는 독자의 정책취급을 판단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상세한 조언은 첫 번째 선진규제팀(Better Regulation Unit)에, 두 번째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 구하여야 할 것이다.

28. 비부처 공공기관 (Nin-Departmental Public Bodies)

중앙행정부처는 영향평가를 작성하는 때에 가이드نس 및 Toolkit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실시청(Executive Agencies)과 성문법상 및 기타 책임에 관련 있는 규제를 만드는 규제자와 같은 다른 단체도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적응한 영향평가를 완성할 것이 권장된다.

어떤 기관은 전문가의 중심이거나 성문법상의 책임을 준수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에 의하여 작성된 영향평가는 주로 항공안전을 고려하고, 정보통신국(Office of Communications)은 통신법하에 있어서 사항을 고려한다.

이러한 과제에 일반화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다. 규제자는 영향평가의 절차의 적절한 적응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 전무에서 영향평가의 절차정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질문은 선진규제국에 직접 하여야 할 것이다.

비부처 공공기관은 자신의 영향평가의 질을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영향평가의 중요한 소견을 요약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주임경제전문가/분석가로부터의 기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9. 새로운 부담의 원칙 (New Burdens Doctrine)

정부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새로운 부담에 대하여 충분히 자금이 부여되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새로운 부담의 원칙”이라 부른다.

새로운 부담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제공의 비용을 증가시켜 모든 새로운 정책 또는 이니셔티브로 정의되고 있다. 새로운 부담은 반드시

시 제안된 성문법상의 의무결과로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법령의 가이드선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고 지방세에 압력을 가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공동체 및 지방정부가 부처를 위하여 공포하고 있는 가이드선은 CLG New Burdens guidance에서 볼 수 있다.

30. 영향평가의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of Impact Assessments)

내각사무처는 현재진행중인 정책결정자에 대한 실천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와 함께 활동한다.

이에 추가하여 정책결정자는 영향평가의 품질보증을 위한 다른 구상을 고려하여도 좋다. 장관의 승인(Ministrial sign-off)에 관한 항, 특히 다음 사항이 여기에 유용하다.

- 위원회(panel)와 같은 내부적인 제도의 개발. 이 수법의 좋은 사례는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시장의 실패 및 고차원 비용 편익분석 -규제정책위원회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정책결정자를 위한 안내(Market Failure Analysis and High Level Cost Benefit Analysis -A Guide for policy makers preparing papers for the Regulatory Policy Committee)이다.
- 부처는 정책제안에 관한 협의 및 사전협의(pre consultation)를 위한 조율방안을 개발하여도 좋다.

31. 일몰조항 (Sunset clauses)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정기적인 재검토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심사되고 갱신되는 것 및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법령집에 남아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지지 않는 한 일정기간이 경

과한 후에 법률이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전체 또는 특정조항 및 법적권한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필요에 상응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일몰조항”을 사용할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실시후 심사에서 갱신에 관한 결정이 보고될 것이다.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EU지령을 실시하는 규칙 또는 기업에게 매우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장기에 걸쳐 정당화되고 있는 법률에 일몰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된다.

일몰조항은 특히 다음 경우에 적절하다.

- 시간제한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구체적 조건이 기한부로 될 수 있는 제안
- 특정시장의 조건에 의거하거나 시장의 발전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권한을 가지게 하는 조치
-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다른 해결수단과 결부될 수 있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하에 만들어진 규정
- 활동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하여 매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 국가권력을 확장하여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
- 특정한 위기 또는 정치적 및 공공적인 압력에 상응하는 규제
-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조치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는, 매우 반대에 직면하여 취해진 조치
- 선진규제TF 2001년 연차보고서(Better Regulation Task Force Annual Report 2001)에는 기한설정에 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32. 규제설명책임을 위한 위원회 및 정책 승인 (PRA and policy clearance)

제안의 유형에 따라 각의합의(collective ministerial agreement)를,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의 심의 또는 장관의 문서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각의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종류의 제안에는 협의문서(consultation document), Green Paper 및 백서의 공표와 복수부처에 의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정책승인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는 “정책승인의 취득(Obtaining policy clearance)”에서 열람할 수 있다.

DEFRA의 규제설명책임을 위한 장관위원회(Ministerial 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와 같은 제안을 제시하여야 할 부처의 장관위원회(ministerial panel)가 있는가도 또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폭넓은 각의합의를 구하기 전에 정책이 규제설명책임을 위한 위원회(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33. 협의규약 (Consultation Code)

협이는 영향평가절차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따라서 정책개발에도 불가결하다.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때에는 협의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는 협의문서의 구조를 제공하고 협의의 반응(responses)은 영향평가를 위한 증거를 제공한다.

협이는 공식 또는 비공식에 관계없이 입수가 가능한 대안, 잠재적인 비용 및 편익과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한 정책제안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제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협의는 또한 제안에의 보다 다

수인으로부터의 찬성을 얻는데 기여하게 된다.

영향평가는 협의상대방 및 조직이 고려된 정책대안과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조망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이는 정책개발에 향하여 그들이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각사무처의 “협의실행규범(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을 준수하여야 한다. 내각사무처 가이드스의 모든 것(Full Cabinet Office Guidance)에도 따라야 한다.

34. 규제대안의 유효화 (Validation of Regulatory Alternatives)

다수의 규제에 관한 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 예컨대 행동규범, 기준, 품질보증이 인가제도를 통하여 독립된 승인요건 또는 요구와 연계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보증이다.

독립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누가 승인절차를 실행하는가 및 그들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어 규제되고 있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인정국(The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은 다양한 독립된 승인절차의 설치 및 규제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이다.

35. EU교섭에 대한 영향평가의 사용 (Using an Impact Assessment in EU negotiations)

(1) EU의 제안에 대한 영국의 영향평가의 작성

영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영국 내에서 실시가 요구되는 EU제안은 영국정부 독자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영향평가를 할 것이 요구된다. 영향평가는 영국의 교섭의 입장 및 그에 관한 각의합의에 정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제안에 관하여 여기에는 지령, 규칙, 결정, EU조항의 기술적 시행규칙(technical adaptation)과 제2 및 제3의 협력하의 결합의 입장 및 협정이 포함된다.

(2)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의 사용

유럽위원회는 “연차 입법 및 업무프로그램(Annual legislative and work programme)”에 포함되는 모든 중요한 제안에 관하여 영향평가를 작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향평가란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 및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다면 제안에 의하여 초래되는 영향에 관한 영국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잠재적인 제안이 영국에 부여하는 영향에 관하여 위원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영국의 데이터를 고려하도록 위원회에 직접 요구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영향평가는 EU입법의 교섭을 하고 있는 담당관에게 중요한 증거의 기반이며, 제안 그 자체가 토의되기 전에 영향평가가 이사회(Council)의 교섭에서 심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이 실시 관행에 따르도록 회의의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가 그 자신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고 있지 않으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원회로부터의 해명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철저한 협의의 증거에 결여되어 있다 -협회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 실행 가능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효과의 적당한 정량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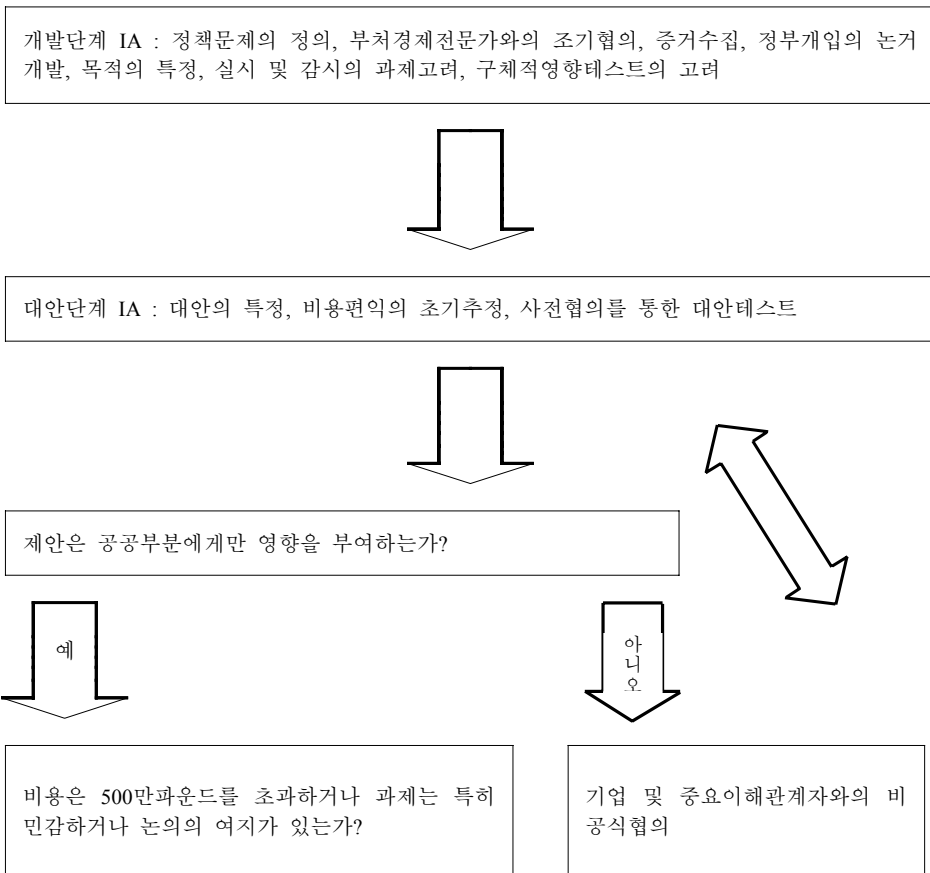
영국의 입장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가맹국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영국의 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원회의 영향평가에 의하여 식별되지 않은, 다른 가맹국에도 영향을 부여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outcome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수도 있다. 유럽의 회의 영국의원 및 위원회 보고자(committee rapporteurs)와 같은 다른 의원과 영향평가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회 및 의회는 위원회 제안의 실질적인 수정에 관한 영향평가를 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영국의 영향평가가 위원회 제안 또는 영향평가에 의하여 취급되어 있지 않은, 증거에 의거한 가능한 대체정책의 outcome을 지시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수정에 관한 영향평가를 작성하도록 의회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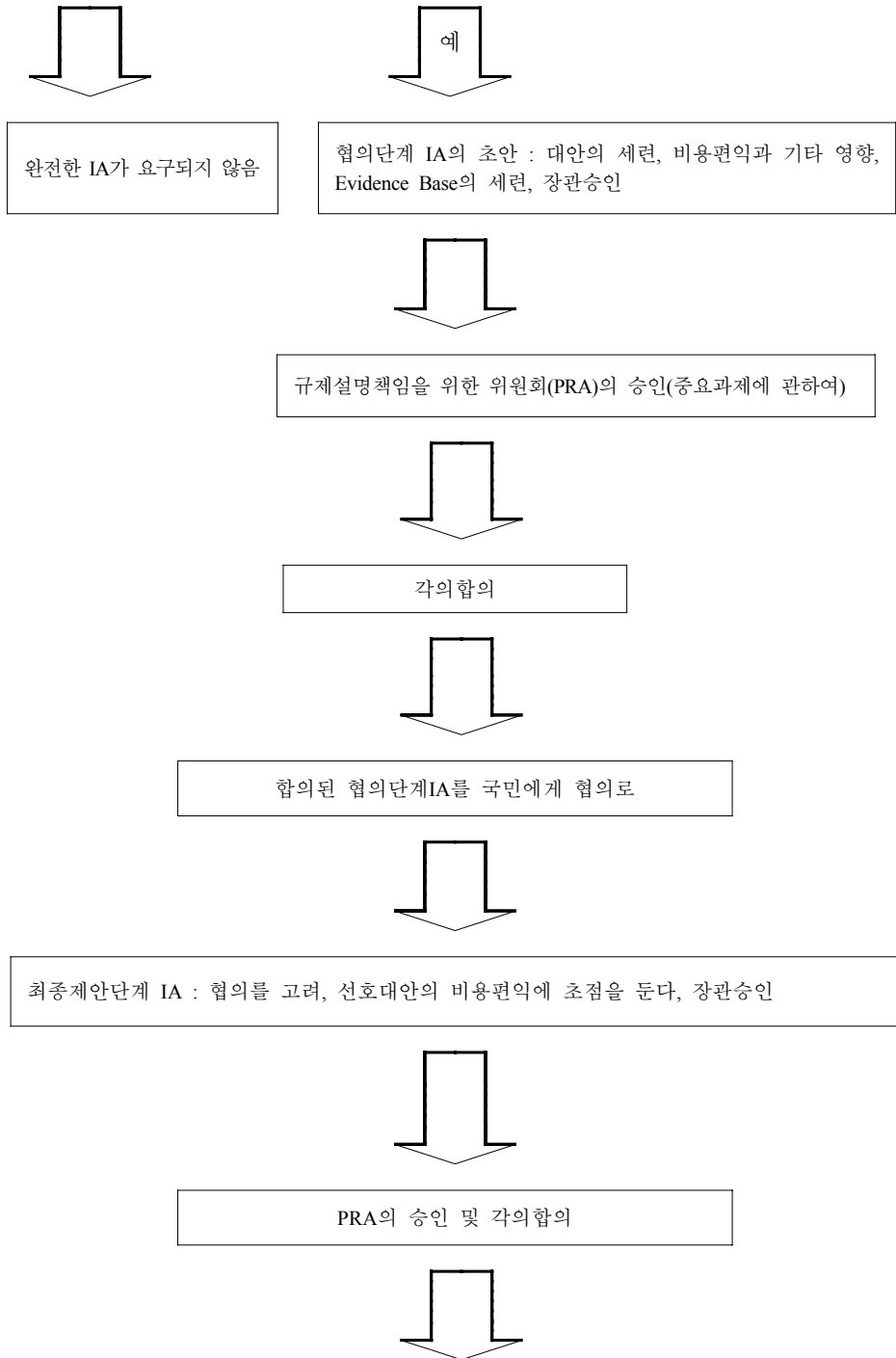
내각사무처 유럽사무국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유럽사무국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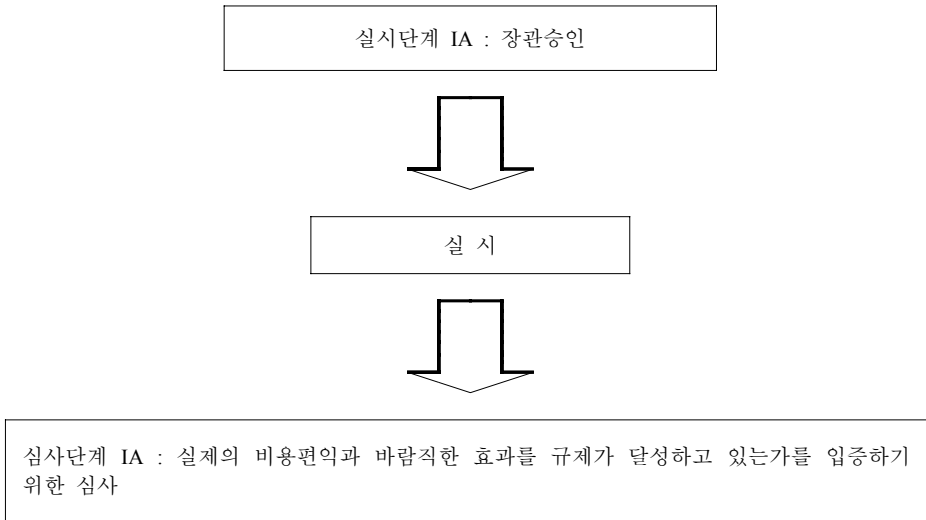
36. 영향평가 조감도 (Impact Assessment flow chart)

다음의 표는 영향평가를 작성하는 다양한 단계를 개설했던 것이다.



II. 영향평가 Toolkit (Impact Assessment Toolkit)





37. 공 표 (Publication)

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모든 최종적 영향평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처의 website의 중앙에 위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장차 공표된 영향평가 전부의 요약이 부처의 website의 영향평가에의 링크와 함께 입수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인터넷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이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의한 영향평가문서의 검색, 선별 및 다운로드를 가능케 하는 영향평가의 다이나믹한 색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최종적인 영향평가의 사본은 의회의 상하양원 도서관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사본 3부는 다음 주소로 :

Deposited Papers Clerk

Oriel Room

House of Commins Library, London SW 1A0AA

Deposited Papers Clerk
Derby Gate Library
1 Derby Gate, London SW 1A2DG

Deposited Papers Clerk
The Library
House of Lords, London SW 1A0PW

문의는 Deposited Papers Clerk, 전화 020 7219 2004 또는 hclibrary@parliament.uk

하위법령집(Statutory Instruments)에는 설명문(Explanatory Note) 가운데 영향평가가 입수가 가능하고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모든 법안 및 하위법령에 관한 영향평가의 사본은 Vote Office(50부) 및 상원 Printes Paper Office(10부)에 입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입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법안에 관하여는 영향평가의 요약이 법안의 설명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조치를 정당화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은 비용 및 편익의 중립적인 진술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문언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완전한 영향평가를 어디서 입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가진 비용 및 편익의 최종제안단계 영향평가는 …… (의회 가운데에서 영향평가가 입수가 가능한 장소의 일람을 삽입)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지하려고 하고 있거나 반대를 의도하고 있지 않은 의원제출 법안(Private Member's Bill)의 경우에는 제2독회 기일까지 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에의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반대하고 있는 의원제출법안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다.

하위법령이 그 자신이 영향평가의 대상인 상위입법(primary legislation)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때에는 부처는 재공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 시점에서 비용 및 편익의 추정치가 변동하고 있지 않으면 재공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위법령이 매우 조기의 상위입법에 의하여 작성된 권한에 두어진 때 또는 상위입법의 조항과는 다른 특정의 변경에 관련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는 통상의 방법으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1. 상세연락처 (**Contact details**)

영향평가의 특정부분에 관련되는 연락처의 상세는 그 관련기일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이 유용하다.

(1) 내각사무처 선진규제국 (Cabinet Offic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선진규제국의 역할은 규제 및 정책제안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것을 확실히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규제자와 협동한다.

Better Regulation Executive는 영향평가의 사용자이며, 영향평가의 질을 보증하는 의도는 없다.

주소 : Kirkland House, 22 Whitehall, London, SW1A2WH

전화 : 020 7276 1745

Website : www.cabinetoffice.gov.uk/regulation

(2) 내각사무처 유럽사무국 (Cabinet Office European Secretariat)

내각사무처 유럽사무국은 다른 EU의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정보 및 가이드언스를 작성한다.

주소 : 70 Whitehall, London, SW1A2AS

전화 : 020 7276 0086

(3) 부처 선진규제팀 (Departmental Better Regulation Units)

이 가이드 가운데 영향평가의 과제에 관한 상세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부처에 있어서 선진규제 및 선진정책입안의 원리를 설립 및 진흥하는 것을 업무로하는 BRU이다.

BRE는 BRU의 연락처의 상세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020 7276 1745에 문의할 것.

(4) 내각사무처 경제 및 국내사무국 (Cabinet Office Economic and Domestic Secretariat)

내각사무처 경제 및 국내사무국은 정책입안의 절차에 관한 정보 및 가이드스를 작성한다.

주소 : 70 Whitehall, London, SW1A2AS

전화 : 020 7276 0083

2. 영향평가사례 (Example Impact Assessment)

이 가설적인 “요약 : 개입 및 대안”과 “요약 : 분석 및 증거”의 완성사례는 영향평가 가운데 이해관계자 및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류의 자료를 예증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것은 초점을 둔 Evidence base 및 영향평가에 첨부되는 구체적 영향테스트에 의하여 지지된다.

<< 요약 : 개입 및 대안 >>

관련부처	연소(Phlogistin)삭감의 영향평가	
단계 대안	제2관 2007년 5월 14일	관련공표 소형기계산업전략

열람 또는 다운로드 : www.abcd.DIT.gov.uk

문의담당자 성명 : Alan Smithee

전화번호 : 208080808

고려중인 문제는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

소형기계산업은 연소중독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연소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연소중독은 공동체에 연간 400-900만 파운드의 비용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추정된다. 널리 공동체에 부과되는 비용을 소형기계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II. 영향평가 Toolkit (Impact Assessment Toolkit)

정책목적 및 의도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경쟁력있는 소형기계산업을 유지하면서 연소의 배출을 삭감시키기 위하여.
 의도되는 효과 : 2010년말까지 연소의 배출의 안전한 차원까지 삭감

어떠한 정책대안이 고려되고 있는가? 선호되는 대안이 있다면 정당화하십시오.

1. 개입이 없다.
2. 저배출소형기계도입을 위한 자발적인 산업규범
3.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저연소배출소형기계의 신기준
4. 신장비를 위한 조성금을 통하여 연소화를 배제하는 소형기계의 생산촉진
5. 연소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과징금 도입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바람직한 효과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언제 정책이 심사되는가?
 2010년 5월

<p><u>장관의 선언</u> 협의단계영향평가용</p> <p>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입수가능하는 증거를 소재로 그것이 유력한 대안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p> <p>책임장관의 서명</p> <p>연월일</p>	<p><u>장관의 선언</u> 최종제안/실시단계평가용</p> <p>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그것이 (a) 정책이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또한 (b)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p> <p>책임장관의 서명</p> <p>연월일</p>
--	--

<< 요약 : 분석 및 증거 >>

정책대안 3	설명 : 소형기계의 신기준
<p>연차비용</p> <p>1회당 1900만 파운드 연수 : 3년 (이행)</p> <p style="text-align: center;">평균연차비용(1회성을 제외) 320만 파운드</p>	<p>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비용의 설명 및 규모 : 소형기계의 생산은 Widgetdale에 집중되고, 이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은 4000만 파운드가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총비용(PV) 8240만 파운드</p>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스 및 Toolkit 전문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기타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는 비용 : 탈연소화된 소형기계의 사용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량소형기계의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비용증가는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음.

<p>연차편익</p> <p>1회당 적용없음 (이행)</p> <p>연수 : 0년</p> <p>평균연차비용(1회성을 제외)</p> <p>5400만 파운드</p>	<p>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중요한 화폐화된 편익의 설명 및 규모 : 매년 약 5%의 세대가 연소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조치에 의하여 매년 영향을 받는 각세대에 관하여 약 30파운드 또는 이들 세대에 대하여 현재가격으로 2억2000만 파운드를 삭감할 수 있다.</p> <p>총편익(PV) 4억 4800만 파운드</p>
---	---

영향을 받는 주된 집단에 의한 기타 중요한 화폐화되지 않는 편익 : 연소중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나, 소형기계산업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

주된 상정/감도/리스크 : 제안은 2010년까지 90%준수를 상정한다. 연소중독삭감에 따른 편익은 불확실하며, 10년간에 걸친 순편익은 1억 8천만-5억 14백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다. 준수비율이 50%라면 순편익은 1억 8천만 파운드가 될 것이다.

<p>가격베이스연도</p> <p>2007년</p>	<p>기간연수</p> <p>10년</p>	<p>순편익폭(NPV)</p> <p>1억8천만 - 5억 14백만 파운드</p>	<p>순편익(NPV 최량추정치)</p> <p>3억 65백만 파운드</p>
-----------------------------	------------------------	---	--

<p>정책/대안의 지리적 범위는?</p>	<p>영국 및 웨일즈</p>
<p>정책이 실시되는 기일은?</p>	<p>2007년 10월</p>
<p>어느 조직이 정책을 실시하는가?</p>	<p>소형기계청</p>
<p>이들 조직을 위한 시행비용의 연차총비용은?</p>	<p>500,000 파운드</p>
<p>시행은 Hampton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p>	<p>예</p>
<p>실시는 EU의 최소한의 요건을 초과하는가?</p>	<p>아니오</p>
<p>제안되는 1년당 상쇄조치의 가치는?</p>	<p>미정</p>
<p>온실효과가스배출의 변화의 가치는?</p>	<p>무시할 수 있음</p>

II. 영향평가 Toolkit (Impact Assessment Toolkit)

제안은 경쟁에 현저한 영향을 부여하는가?			아니오	
조직당 연차비용 (£-£) (1회성비용을 제외)	극소 136	소규모 349	중규모 561	대규모 774
이들 조직 중 면 제되는 것은 있 는가?	아니오	아니오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관리상의 부담의 베이스라인에의 영향(2005년도 가격) £(증 감) 증 30만 파운드 감 120만 파운드 순영향 -90만 파운드				

요약서를 위한 Evidence Base

[정책대안 또는 제안을 낳은 증거, 분석 및 상세한 기술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공간(최고 30페이지가 장려된다)을 사용하시오, 정보가 본 양식의 p.1 및 p.2의 요약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바람]

구체적 영향테스트 - Checklist

다음 표를 사용하여 정책대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폭넓게 고려하였는가를 명시할 것.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심사결과도 주된 Evidence Base에 포함할 것을 확실히 할 것 ; 기타 결과는 부속서류로서 족함.

제 2 부 영향평가 가이드스 및 Toolkit 전문

착수되는 Test 유형	Evidence Base 가운데 성과가 있는가?(예/아니오)	성과는 부속문서로 되어 있는가?(예/아니오)
경쟁평가		
소규모회사영향테스트		
법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가스평가		
기타 환경		
건강효과평가		
인종평등		
장애인평등		
남녀평등		
인권		
농촌지역에의 영향		